

세법연구 12-05

금융상품 과세자료 사전확보제도에 대한 연구

2012. 8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안 종 석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구 자 은 공인회계사

정 경 화 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미국과 영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10
1. 미국	10
가. 개요	10
나. 신고대상거래	12
다. 신고대상	18
라. 신고의무자 및 신고절차	19
마. 미신고에 대한 제재	22
2. 영국	25
가. 개요	25
나. 신고대상거래	28
다. 신고내용	33
라. 신고의무자 및 신고절차	34
마. 미신고에 대한 제재	36
III.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제도	38
1. 호주의 예규제도	39
2.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제도(Product Ruling)	41
가. 개요	41
나. 신청	43
다. 투자상품 예규의 결과	50
라. 예규의 효력	51

다. 예규 적용에 대한 제재	54
IV. 제도 비교 및 결론	56
1. 개요 및 목적	56
2. 제도의 활용 정도	57
3. 신고의무자	58
4. 신고내용	58
5.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	59
6. 가산세	61
7. 신고시기	63
8. 비교 및 결론	64
참고문헌	69
부 록	
[부록 1]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의 결과 사례	70
[부록 2] 호주의 금융상품별 고객구분 기준	82
[부록 3]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의 사전확인(Product Ruling) Check List	84

표 목 차

〈표 II-1〉 미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과정	12
〈표 II-2〉 미국의 손실거래의 손실액 기준금액	16
〈표 II-3〉 미국의 손실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17
〈표 II-4〉 영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건수(기간누적, 직접세 분야)	27
〈표 III-1〉 호주의 예규 형태 비교	40
〈표 IV-1〉 주요국의 제도비교	65
〈표 IV-2〉 금융상품 정보의 조기확보 가능제도 비교	67

I. 서론

-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수집이 불가능하여 과세당국의 빠른 대처가 어려움
 - 우리나라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파생상품 소득,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등은 과세에서 제외되므로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음
 -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에서도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상품 관련 소득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등이 금융상품의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과세관청은 대부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실정임

- 금융상품과 관련된 대표적인 과세 논쟁으로 엔화스왑예금 거래가 있었는데, 국세청은 해당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사전적인 정보의 입수 및 대응이 어려웠고, 사후적인 법 개정을 통하여 대처하였음
 - 엔화스왑예금 거래는 선물환차익을 수익으로 하는 파생금융상품으로 2003~2004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었음
 - 엔화스왑예금 거래는 파생상품 거래이익인 선물환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이익을 파생상품 거래이익으로 전환하여 과세를 회피하였음¹⁾
 - 은행은 계약체결일에 고객으로부터 원화를 매입하고 현물환율로 엔화를 판매한 후 만기일에 판매한 엔화를 선물환율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은 엔화로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함

1) 정운오·전병욱, 「엔화스왑예금 과세사건 판결의 분석」, 『租稅法研究』 [X VI-3], 2010.11, p.122~162

- 고객의 입장에서 이익은 ① 현물환과 선물환의 차이와 ② 엔화정기예금이자가 됨
 - 예를 들어 100만원을 예금하면서 현물환율이 100엔이고 선물환율이 120엔이라면, 200,000원(10,000엔 × 20엔)의 이익이 현물환과 선물환의 차이에 따른 이익이 됨
 - 대법원은 엔화스왑예금거래의 궁극적인 결과가 고율의 확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원화정기예금거래와 마찬가지로 하여 법률에 구체적 부인규정이 없는데도 엔화스왑 예금거래를 원화정기예금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함²⁾
 - 한국씨티은행과 관련된 건은 1심, 2심을 거쳐서 최종심에서도 ‘부당한 과세’로 결론이 내려졌고, 신한은행과 관련된 건은 소송이 진행 중임
 - 국세청은 2012년 세법개정을 통하여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이 파생상품과 결합되어 있는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근거를 신설하여 대처함
 - 이자(배당)소득에 기존에 이자(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³⁾
- 추가로 골드뱅킹(금 적립계좌)이라는 금융상품의 경우 출시됐을 때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09년 자본시장법이 신설되면서 파생상품으로 분류된 골드뱅킹을 배당소득세(15.4%)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림
 - 2012년 6월 조세심판원은 판매은행이 ‘골드뱅킹 투자자에게 세금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조세심판 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림
- 위 사례와 같이 절세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사후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최소화하고 조세회피 상품 및 거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에서 금융상품 및 거래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입수할 필요가 있음
- 주요국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인 과세자료가 확보 가능한 제도로써 조세회피

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3)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4호,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0호

협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가 있음

- 조세회피 협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조세회피 거래를 제재하는 직접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관련 정보가 국세청에 제공됨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조세회피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그 외에도 조세회피 거래를 규제하는 제도로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규정(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과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ATP) 조장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있을 수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조세회피 협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에 대해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봄

- 조세회피 협의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는 미국, 영국이 있으며(제Ⅱ장), 투자상품 예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는 호주가 있음(제Ⅲ장)
- 주요 검토내용은 운용되는 제도의 실제 활용정도, 신고대상 거래, 신고의 강제여부, 미신고 시 제재, 신고의 효력 등임

Ⅱ. 미국과 영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세청은 해당 신고를 통하여 조세회피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미국과 영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1. 미국

가. 개요⁴⁾

- 미국 국세청과 재무부는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Tax Shelter Disclosure Regime)를 1984년에 내국세법 §6011, 6111, 6112에 임시적으로 관련 제도로써 도입하였음
 - 이 제도는 정부가 정한 특정 조세회피 혐의거래에 대하여 거래 시작 시점에 거래의 구성에 대해 등록하고, 거래가 발생한 후에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것임
 -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 신고대상거래(reportable transaction) 의무를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납세자까지도 신고제도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혐의거래를 조직한 자(tax shelter organizer)’만 등록의무를 부여하였음
 - 그러나 2004년 미국고용창출법(AJCA: Americal Jobs Creation Act of 2004)은 이 제도의 등록 및 신고 등에 중요한 변화를 주었음
 - 초기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거래 신고가 강제적이긴 하였지만 미신고

4) 안종석 외(2007) 재정리 및 관련 법 업데이트

에 대한 가산세 등이 없었고, 거래 당사자 등이 신고대상거래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등 그 효과가 미흡하였음

-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신고 등에 대한 가산세를 강화하였으며, 등록 의무자를 '혐의거래를 조직한 자'에서 '실질적인 자문을 한 자(material advisor)'로 확대하였고, 변호사·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의 윤리, 책임, 업무실행 기준을 규정 한 Circular 230을 제정하였음⁵⁾

□ 신고대상거래에 대한 주된 실질적 자문을 한 자(material advisor)는 서식 Form 8918을 이용하여 거래의 상세내용 등을 보고해야 함

- 실질적 자문을 한 자는 보고대상 거래의 구성, 관리, 홍보, 판매, 실행 등에 있어 주된 도움이나 지원 또는 조언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련 소득이 일정 금액(1만 달러~2.5만달러) 이상인 사람을 의미함
- 신고대상거래에 참여한 납세자도 거래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예상되는 조세 혜택을 서식 Form 8886에 의해 세금 신고 시 함께 보고해야 하며, 동 보고내용은 국세청 내의 조세회피 분석사무소(Office of Tax Shelter Analysis)에도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이러한 법제도의 정비 외에 2000년 2월에는 조세회피 분석사무소(OTSA: Office of Tax Shelter Analysis)를 설치함

- 조세회피 혐의거래 자료를 중점적으로 분석·조사하도록 하였으며, 2005년 6월에는 Circular 230의 실행을 담당하는 전문가 책임 관리소(OPR: 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를 설치하였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목적은 조세회피 거래의 특성이 있는 해당 거래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거래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사전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5) 2005년 6월에는 Circular 230을 담당하는 전문가 책임관리국(OPR: 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이 설치되었으며, 조세전문가가 Circular 230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견책을 받거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고대상거래의 등록번호로 거래 전체를 추적할 수 있어서, 거래 내역을 사전에 신고하는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거래의 상품 개발이나 판매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

〈표 Ⅱ-1〉 미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과정

관련법	주요 내용
Deficit Reduction Act of 1984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혐의거래 등록규정(구IRC 6111) • 등록된 혐의거래의 투자자의 기록 보관유지 규정(구IRC 6112) • 가산세규정(구IRC 6700, 6701, 7408) • 등록의무자: 혐의거래조직자(tax shelter organizer)
Tax Reform Act of 1986	- 수동적 투자손실 공제 제한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수동적 투자 손실은 수동적 투자소득에서만 공제 가능
Americian Jobs Creation Act of 2004	- 혐의거래 사전신고제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세 강화 • 신고의무자에게 실질적 자문을 제공한 자(material advisor)로 확대
Circular 230(2004)	- 조세전문가의 윤리, 책임, 업무실행 실무기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정 위반 시 견책 또는 금전적인 벌금

자료: 안중석 외(2007) 참조

나. 신고대상거래

- 조세회피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성을 가진 거래를 6가지 범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범주에 속하는 거래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⁶⁾
 - 국세청이 고시한 거래(listed transactions)
 - 비밀거래(confidential transactions)
 - 보호계약 거래(contractual protection)
 - 손실거래(loss transactions)
 - 관심 거래(transactions of interest)
 - 단기 보유자산 거래(transactions involving a brief asset holding period)

6) Notice 2006-6

1) 국세청이 고시한 특정 거래(Listed transactions)

- 국세청은 조세회피 거래로 판정된 거래들을 고시, 법규, 또는 안내 책자(Published guidance) 등을 통해 고시함
 - 고시된 거래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는 신고 대상이 되며, 2009-59를 통해 다음과 같이 34가지 거래가 고시된 상태임⁷⁾
 - 특정 불입연금에 대한 불입금 공제: Rev. Rul. 90-105, 1990-2 C.B 69
 - 복지혜택기금(Welfare benefit fund)의 불입금 공제한도규정 남용: Notice 95-34, 1995-1 C.B 309
 - 조합제도(Partnership)의 손익배분을 이용한 조세회피 거래: ASA Investering Partnership v. Commissioner, 201 F.3d 505(D.C. Cir. 2000), and ACM Partnership v. Commissioner, 157 F.3d 231(3d Cir. 1998)
 - 자선잔여신탁 거래: Treas. Reg. 1.643(a)-8.⁸⁾
 - 저당설정된 자산 배분에 의한 손실 거래: Notice 99-59, 1999-2 C.B. 761
 - Fast Pay Stock Arrangement: Treas. Reg. 1.770(1)-3
 - Debt instrument Straddle: Rev. Rul. 2000-12. 2000-1 C.B. 744
 - 조합체의 장부가액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거래: Notice 2000-44, 2000-2 C.B. 255
 - 자회사를 이용한 모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주식보상거래: Notice 2000-60, 2000-2 C.B 568
 - 괌 신탁(Guam Trust) 거래: Notice 2000-61, 2000-2 C.B. 569
 - 법인 자산의 매도를 위한 중개회사(intermediary corporation) 거래: Notice 2001-16, 2001-1 C.B. 730
 - 우발부채 거래: Notice 2001-17, 2001-1 C.B. 730
 - Basis Shifting 거래: Notice 2001-45, 2001-2 C.B. 129
 - 대부거래의 보증계약에 의한 자산의 고평가 거래: Notice 2002-21, 2002-1 C.B.

7) http://www.irs.gov/irb/2009-31_IRB/ar07.html

8) IRC 170, 2055, 2106, 2522, 644 and 643

730

- Notional Principal Contracts: Notice 2002-35, 2002-1 C.B. 992
- Partnership Straddle: Notice 2002-50, 2002 C.B. 98
- Lease-In / Lease-Out(LILO) 거래: Rev. Rul. 2002-69, 2002-2 C.B. 760
- S Corporation의 종업원주식보상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ESOP)를 이용한 소득배분 거래: Rev. Rul. 2003-6, 2003-1 C.B. 286
- 해외(Offshore) 이연보상계약 거래: Notice 2003-22, 2003-1 C.B. 851
- 집합적으로 계약된 복지혜택기금(Collectively bargained Welfare Funds) 거래: Notice 2003-24, 2003-1 C.B. 853
-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옵션(Stock option)의 양도거래: Notice 2003-47, 2003 I.R.B. 132
- Lease Strips 거래: Notice 2003-55, 2003-34, I.R.B. 395
- 경합채무(Contested Liabilities)의 손금인정을 위한 신탁(Trust)에 양도거래: Notice 2003-77, 2003-49 I.R.B. 1182
- 외국통화옵션계약의 상쇄거래 : Notice 2003-81, 2003-51 I.R.B. 1223
- Roth IRA(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의 남용거래: Notice 2004-8, 2004-4 I.R.B. 333
- S corporation의 ESOP 남용거래: Rev. Rul. 2004-4, 2004-6 I.R.B. 414
- IRC 412(i) 연금과 관련된 보험계약 남용거래: Rev. Rul. 2004-20, 2004-10 I.R.B. 546
- 외국납부세액공제 남용거래: Notice. 2004-20, 2004-11 I.R.B. 608
- S corporation의 주주들의 소득이전 거래: Notice 2004-30, 2004-17 I.R.B. 828
- 조합체를 통한 관계회사의 금융거래: Notice 2004-31, 2004-17 I.R.B. 830
- Sale-In / Lease-Out 거래: Notice 2005-13, 2005-9 I.R.B. 630
- 납세자가 손실을 목적으로 외국 통화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상쇄포지션 사용 거래(offsetting positions): Notice 2007-57, 2007-2 C.B. 87
- §419(e)(3)에 규정된 신탁 및 기타 펀드 등의 특정 거래: Notice 2007-83, 2007-2 C.B. 960

– 부실자산과 관련된 거래: Notice 2008-34, 2008-12 I.R.B. 645

2) 비밀거래(Confidential transactions)

- 비밀거래는 거래의 구조 및 설계와 관련하여 비밀을 유지한다는 약정을 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 이상인 거래의 자문료를 받는 경우를 일컫음
 - 비밀약정에는 조세자문자가 조세전략 또는 조세구조와 수행방법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됨
 - 계약상 납세자의 비밀 준수 의무가 법률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에도 비밀약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비밀거래에 해당되는 최소자문료는 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25만달러, 그 외의 경우에는 5만달러임⁹⁾
 - 자문료는 조세전략에 대한 모든 대가와 조세 외의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는 자문료, 거래수행 관련 용역비를 모두 합하여 산정함

3) 보호계약 거래(Transactions with contractual protection)¹⁰⁾

- 보호계약 거래란 조세전문가가 제시한 조세효과가 계약에 의해 보호되는 거래이며, 조세 혜택에 따라 전문가의 보수가 달라짐
 - 조세전문가가 제시한 거래 결과로 나타난 세제상의 혜택이 기대하였던 것과 상이한 경우 납세자가 이미 지급한 자문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요청할 수 있는 거래 또는 수수료의 규모가 결과적으로 나타난 세제상의 혜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거래가 이에 해당됨

9) 법인 납세자는 조합(partnership), 신탁(trust), 법인의 소유자(owner)를 포함함

10) http://www.irs.gov/irb/2007-07_IRB/ar15.html

4) 손실거래(Loss transactions)¹¹⁾

- 납세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손실 공제를 요구하는 거래를 손실거래라고 하며, 일정금액이란 법인이거나 법인으로만 구성된 파트너십의 경우 과세연도당 1천만달러, 5년 누적 손실액 2천만달러, 개인이나 S-법인, 기타 파트너십의 경우 과세연도당 200만달러, 5년 누적 손실액 400만달러를 말함
- 손실금액은 미국 내국세법 제165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영업활동 또는 자본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로서 공제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 외환 등 화폐의 거래, 투자목적물의 거래, 기타 자산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액이 포함되며, 이익과 상쇄하기 전 또는 소급·이월공제를 고려하지 않는 총손실금액을 말함
 - 미국 국세청은 특정 자산의 처분·교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 특정한 손실은 신고대상 손실로 간주하지 않으며,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II-2>, <표 II-3>과 같음

〈표 II-2〉 미국의 손실거래의 손실액 기준금액

(단위: 만달러)

구 분	1개 과세연도	5년 누적
법인, 법인으로만 구성된 조합	1,000	2,000
개인, S corporation, 신탁, 기타 조합	200	400
개인과 신탁의 외국환거래	5	N/A

11) <http://www.irs.gov/businesses/article/0,,id=214002,00.html>

〈표 II-3〉 미국의 손실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손실

-
- ① 화재, 수재, 난파, 도난으로 인한 손실(IRC 165(c)(3))
 - ② 특정 자산의 처분 또는 교환거래
 - * 특정 자산이란 적격장부가액(Qualifying basis)을 가진 자산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 경우를 의미함
 - i) 자산의 구입과 개량을 위하여 납세자가 현금만 지출한 경우,
 - ii) 자산 교환 시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거래에 해당하여 장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식하는 경우(IRC 358, 368)
 - iii) 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자산의 장부가액(IRC 1014)
 - iv) 증여 또는 신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장부가액(IRC 1015)
 - v) 동종자산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장부가액(IRC 1031)
 - ③ Ponzi Schemes에 따른 거래로 발생한 손실
 - ④ 적격장부가액을 가진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평가자산을 시가평가방법(mark-to-market)을 적용하여 산정한 손실(IRC 475, 1256, 1296(a))
 - ⑤ 특정 스왑손실
-

자료: <http://www.irs.gov/businesses/article/0,,id=214002,00.html>

5) 단기 보유 자산의 거래(Transactions involving a brief asset holding period)

- 납세자가 보유한 기간이 45일 이하인 자산을 거래한 결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포함하여 총 2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공제가 예상되는 경우 그 거래는 신고대상 거래가 됨
 - 단기 보유 자산의 거래는 자산을 단기간 보유하면서 큰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거래를 억제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6) 관심 거래(Transaction of interest; TOI)

- 2006년 11월 2일에 신고대상 거래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서 국세청과 재무부가 조세회피 또는 탈세로 판정될 가능성이 큰 거래를 관심 거래(TOI)로 분류함¹²⁾
 - 국세청과 재무부는 조세회피 또는 탈세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은 자료가

12) <http://www.irs.gov/businesses/article/0,,id=180877,00.html>

충분하지 못하여 조세회피 또는 탈세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특정 거래들을 관심거래로 고시함

- 조세회피 또는 탈세의 잠재성을 판단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범주는 국세청과 재무부가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는 범주라고 할 수 있음

7) 신고대상 거래의 예외규정

- 국세청장이 특정 거래에 대하여 신고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안내서(published guidance)나 예규(letter ruling)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의 5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일지라도 신고대상이 되지 않음
 -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됨
 - 정부의 감독을 받는 특정 투자회사(RIC: Regulated Investment Company)¹³⁾와 RIC가 지분의 95% 이상을 소유한 투자중개회사(investment vehicle)는 신고대상 거래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고시된 거래(Listed transactions)를 제외한 기타 범주의 거래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됨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리스거래’는 신고대상 거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¹⁴⁾

다. 신고대상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에 이용되는 서식은 실질적 자문을 한 자(material advisor)와 혐의거래에 참여한 납세자에 따라, 두 가지가 있음

13) IRC §851에서 정의되고 있는 RIC는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에 등록된 내국법인으로 과세연도기간 동안 투자운용 또는 투자신탁회사로 간주되거나, 투자회사법에 의한 신고를 통해 사업투자회사(Business investment company)로 의제되는 회사를 의미한다. RIC는 법인세 신고 시 RIC로 신고하여야 하며, 총 과세소득의 90% 이상이 배당소득, 이자소득, 주식처분익, 파생금융상품 관련 소득이어야 함

14) 구IRC §6111(d)와 구IRC §6112와 관련된 것으로 조세회피 거래로 간주되는 특정비밀거래(구IRC §6111(d)), 남용적 조세회피의 잠재성이 있는 거래(구IRC §6112)를 제외한 리스거래는 영업상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신고대상거래의 범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 규정은 납세자의 신고부담을 덜어주려는 데 목적이 있음

- 실질적인 자문을 한 자는 Form 8918(Form 8918: Material Advisor Disclosure Statement)을 작성하여야 하고, 신고대상 조세회피 혐의거래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래에 참여한 납세자는 Form 8886(Form 8886: Reportable Transaction Disclosure Statement)을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Form 8918은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¹⁵⁾

- 실질적 자문을 한 자는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실질적 자문의 조장, 판매, 실행, 조언 등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기재하여야 함
- 해당 거래구조와 관련된 법규정, 기대되는 조세 혜택 유형, 해당 계약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함

□ 신고대상 거래에 참여한 납세자가 신고해야 하는 Form 8886은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¹⁶⁾

- 납세자는 신고대상 거래별로 Form 8886을 작성해야 하며, 신고서식에는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신고대상 거래의 유형과 명칭, 혐의거래 등록번호, 주요 실질적 자문을 한 자에 대한 정보, 거래 사실관계와 기대되는 조세 혜택의 내용 및 금액 추정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라. 신고의무자 및 신고절차

- 미국은 이전에는 조세회피 혐의거래를 조직한 자(organizer)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으나, 2004년 미국고용창출법(AJCA: Amercial Jobs Creation Act of 2004)을 통해 신고제도를 개정하면서 '실질적 자문을 제공한 자'로 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거래를 조직한 자 및 실질적 자문을 제공한 자(material advisor)로 규정하고 있음¹⁷⁾
 - 개정된 세법 제6111조에서는 실질적인 자문을 한 자(material advisor)를 ① 신고

15) IRC §6111-3(b)(2)(ii)

16) IRC §6011-4

17) 구IRC §6111(e)

대상 거래를 조직하거나 관리, 조장, 판매, 실행, 수행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조언 또는 자문을 한 자(material aid, assistance or advice)로서 ② 조언 또는 자문의 대가로 신고대상 거래의 조세 혜택이 모두 자연인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직·간접적으로 받은 총소득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국세청이 고시한 특정 거래의 경우에는 1만달러)이며, 자연인 이외에는 25만달러(국세청이 고시한 특정 거래의 경우에는 2.5만달러)를 초과하는 자, 또는 재무장관이 정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를 말함¹⁸⁾

- 혐의거래의 신고는 첫 번째 단계는 최초로 혐의거래가 설계되어 판매되는 경우로 거래를 조직한 자(tax shelter organizer) 또는 실질적인 자문을 한 자(material advisor)가 국세청에 혐의거래를 등록하는 것이며, 두 번째 단계는 혐의거래에 참여한 납세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에 등록된 혐의거래에 대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 첫 번째 단계에서 거래를 조직한 자와 자문을 한 자(이하 ‘등록의무자’)가 국세청에 거래를 등록하면 국세청은 등록번호를 부여하는데, 등록의무자는 이 번호를 거래에 참여한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납세자는 소득 신고 시 혐의거래의 등록번호와 함께 거래 내역을 신고하여야 함

- 등록의무자는 신고대상 거래에 관련된 정보를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 실질적인 자문을 한 자는 Form 8918(Form 8918: Material Advisor Disclosure Statement)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실질적 자문을 한 자는 지원, 조언 등을 제공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을 직·간접적으로 획득하고, 납세자가 관련 거래를 체결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익월 말일까지 국세청 조세회피 분석사무소(Office of Tax Shelter Analysis; OTSA)에 제출하여야 함
 - 국세청은 남용적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는 혐의거래 조직자와 판매자를 포함하여 등록의무자들에게 거래 참여자 및 참여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7년간 보관·유

18) 신IRC 6111(b)

지하고 국세청이 조사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 적시에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1) 혐의거래의 등록¹⁹⁾

- 혐의거래를 조직한 자는 수요자에게 조세회피 거래 판매 제안을 하기 이전에 등록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자문을 한 자는 자문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함²⁰⁾
 - 판매 제안일이란 구두로 하든지 문서로 하든지 형식에 불문하고 투자자가 혐의거래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광고 또는 메일과 전화 등을 통해 잠재적 투자자에게 거래 제안을 한 날을 포함하는 것임²¹⁾

- 정해진 기한까지 등록의무자가 Form 8918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국세청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등록번호는 거래가 될 때 거래에 참여하는 납세자에게 이전됨²²⁾
 - 해당 거래를 통해 조세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Form 8886에 등록번호와 기타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해야 함
 - 등록의무자가 등록번호를 납세자에게 알려줄 때는 문서로 해야 하며, 성명, 등록번호, 거래 참여자의 납세자번호와 혐의거래와 관련된 조세 혜택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혐의거래 조직자가 A에게 혐의거래를 판매하고 A가 다시 제3자인 B에게 판매하는 경우, 혐의거래 조직자는 A에게, A는 B에게 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함²³⁾

- 한번 등록된 혐의거래는 재등록할 필요가 없지만 최초 등록 당시의 사실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거래 조직자로 하여금 Form 8918을 통하여 수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9) Notice 2004-80

20) Sec 301.6111-1T A40

21) 7IRC 6111(a)(1)과 Sec 301.6111-1T(Q&A40/42~43)

22) Sec 301.6111-1T(Q&A47)

23) IRC 6111(b)와 Sec 301.6111-1T(Q&A51~53)

- 중요한 변경이란 협의거래 또는 협의거래 등록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정보의 변경, 등록 시 보고되지 않는 주된 자산의 취득 또는 자가제조, 최소 투자단위에 대한 금융기법의 변화, 주된 사업활동의 변경 등을 말함²⁴⁾

2) 협의거래의 신고

- 신고대상 거래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래에 참여한 납세자는 서식 8886(Form 8886: Reportable Transaction Disclosure Statement)을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 8886의 사본은 국세청 조세회피 분석사무소(Office of Tax Shelter Analysis: OTSA)로 송부됨²⁵⁾
 - 납세자의 협의거래 신고는 신고대상 거래가 있는 매 과세연도마다 신고의무가 부여되지만 협의거래의 등록은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수정하면 됨

마. 미신고에 대한 제재

- 등록 및 신고의무, 자료보관 의무를 해태한 자, 소득을 과소신고한 자, 그리고 조세회피 거래를 조장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 등을 부과함
 - 미신고 등에 대한 벌칙이 2004년 AJCA를 통해서 크게 강화되어 납세자의 미신고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가산세가 없어 신고의무 이행 수준이 매우 낮았는데, 2004년에 납세자의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제도를 도입하여 이행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1) 조장자의 협의거래 등록단계

- 2004년에 개정된 내국세법 제6707조에 의하면 등록의무자인 실질적 자문을 한 자가 등록의무를 소홀히 하여 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24) Sec 301.6111-1T(Q&A44~45A)

25) Sec 1.6011-4(d)

는 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 비밀거래에 대한 중과 규정은 없어졌으며, 그 대신 국세청에서 고시한 특정 신고 대상거래(Listed transactions)의 경우에 중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
 -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벌금 규모가 달라지는데,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20만달러와 자문을 제공한 자가 받은 총소득금액의 70% 중 큰 금액,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20만달러와 자문을 제공한 자가 받은 총소득금액의 50% 중 큰 금액임

-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 후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등록번호를 거래 판매 시 매수자(거래 참여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건당 10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함

2) 납세자의 혐의거래 신고단계

- 매수자인 거래 참여자는 소득세 신고 시 혐의거래 등록번호를 같이 제출해야 하나,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면 건당 250달러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함
- 2004년의 AJCA 이전에는 납세자가 혐의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가산세·벌금은 없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하게 세금을 공제받거나 사기로 과소납부한 것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였음
 - 납세자의 신고율은 매우 낮았으며, 이는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에 납세자의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제도를 도입되었음
-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 시에 서식 8886에 따라 신고대상 거래 유형과 명칭을 구분하여 작성·제출해야 함
 - 신고대상 거래의 유형과 명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1만~20만달러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 고시된 특정 거래의 경우에는 개인 10만달러, 법인 20만달러의 가산세를 납부

해야 하고, 기타 거래의 경우에는 개인 1만달러, 법인 5만달러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함

- 신고를 하였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과소신고하는 경우 그 금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과소신고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데, 이를 납부불성실 가산세라고 함
 - 일정액이란 ① 부당 과소신고가 없는 경우에 산정되는 세액의 10%와 ② 1천만 달러(개인의 경우 500만달러) 중 작은 금액을 말함²⁶⁾
- 세법 제6662A조에 의하면 신고하지 않고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에는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됨
- 사기(fraud)로 세금을 과소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소납부세액의 75%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²⁷⁾
 - 이 때 앞서 언급한 20% 가산세 규정은 배제되어 중복하여 적용되지 않으며, 납세자의 사기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음²⁸⁾
- 법인인 납세자가 고시된 거래의 불성실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또는 미신고된 신고대상 거래의 과다평가로 납부하는 가산세를 납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하는 정기적인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함(IRC 6707A(E))
 -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만달러의 벌금을 부담하여야 함

3) 자료보관 의무와 관련된 벌금

- 실질적 자문을 한 자는 신고대상 거래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 납세자의 리스트를 유지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서면으로 요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제출해야 함
 - 납세자 리스트에는 보고대상 거래의 명칭과 고유번호, 납세자의 이름과 납세번호,

26) IRC 6662

27) IRC 6663(a)

28) IRC 6662(b)

각 납세자가 거래를 체결한 날짜, 투자금액, 다른 실질적 자문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이름, 거래의 조세상의 구조 및 취급 등 거래에 대한 상세한 설명 등이 있음 (Form 13976 참조)

- 이러한 자료의 유지 보관 의무가 있는 자는 관계당국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달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 2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하루당 1만달러씩 벌금이 부과됨

2. 영국

가. 개요²⁹⁾

- 영국은 조세정보의 사전적 확보를 주목적으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고용거래와 특정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하다가 점차 그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조세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 거래 형태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의 특성을 충족하는 경우에 조장자 (promotor) 또는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사전에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임
- 영국은 2004년 8월부터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개인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한 후 점차 신고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2005년에 부동산 등록세를 추가하였고, 2007년에 국가보험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11년에는 상속세를 추가하였음³⁰⁾

29) 안종석 외(2007)의 관련 내용을 재정리하고 관련 법 업데이트

30) 구IRC §6708 및 영국국세청(www.hmrc.gov.uk/aiu/summary-disclosure-rules.htm)

-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에 대한 신고제도는 재정법(Finance Act 2004) Part 7에 ‘조세회피 거래의 신고(Disclosure of Tax Avoidance Scheme)’로 도입됨
 - 이 법은 2004년 8월 1일 이후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나, 고용거래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17일 이후 거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2004년 7월 21일 이후 거래에 대하여 적용됨
 - 처음 도입 시에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중 고용거래와 특정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신고제도를 운영하였으나, 2006년 8월부터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전체로 그 범위를 넓힘
 - 부동산 등록세에 대한 신고제도는 시장가치가 500만파운드 이상인 상업용 부동산과 100만파운드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10가지 거래와 법에 규정된 특성을 가진 8가지 형태의 거래를 신고 대상 거래로 하고 있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목적은 조세 계약거래(arrangements) 및 이 계약거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대한 사전적인 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³¹⁾
- 이 외에도 금융기관은 조세회피 혐의거래에 해당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금융기관이 이러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억제하게 함
 - 또한 납세자는 이러한 상품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고 특정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으므로 조세회피 혐의거래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억제될 수 있음
- <표 II-4>에 나타난 영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건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누적건수로 2012년 3월 31일까지 직접세 분야에서는 2,289건의 신고가 있었고, 부가가치세 분야에서는 913건의 신고가 있었음
- 직접세 분야는 금융(Financial), 근로(Employment),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와 국가보험(main regime & NI hallmark), 부동산 등록세(SDLT), 상속세(IHT)로 나누어

31) Guidance - Disclosure of Tax Avoidance Schemes, HMRC, 2012.2

서 신고건수를 집계함

- 2006년 8월부터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전체로 신고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 시기 이후에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와 국가보험으로 통합하여 집계됨

○ 최초 도입 시에는 직접세 분야 기준으로 500~600건에 달하던 신고건수가 최근에는 100~150건 정도임

〈표 II-4〉 영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건수(기간누적, 직접세 분야)

기간	Financial	Employment	Main Regime & NI Hallmark	SDLT	IHT	Total
2006.3.31	434	191	0	485	n/a	1,110
2006.7.31	451	198	0	517	n/a	1,166
2006.9.30	451	198	34	560	n/a	1,243
2007.3.31	463	198	125	670	n/a	1,456
2007.9.30	463	198	206	706	n/a	1,573
2008.3.31	465	198	330	740	n/a	1,733
2008.9.30	465	198	379	754	n/a	1,796
2009.3.31	465	198	432	768	n/a	1,863
2009.9.30	465	198	484	800	n/a	1,947
2010.3.31	465	198	548	829	n/a	2,040
2010.9.30	465	198	592	833	n/a	2,088
2011.3.31	465	198	645	850	n/a	2,158
2011.9.30	465	198	695	858	1	2,217
2012.3.31	465	198	762	863	1	2,289

자료: 영국 국세청(www.hmrc.gov.uk/avoidance/statsmarch12.pdf)

나. 신고대상거래

- 금융상품 거래는 조세회피 혐의거래의 신고대상 중 표준화된 조세상품(standardised tax products)에 속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전 신고대상이 됨
- 조세회피 혐의거래의 신고대상이 되는 거래는 특정 조건을 모두 갖춘 계약거래(arrangements) 또는 제안을 의미함
 - 특정조건은 첫째, 재무성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성을 가진 거래여야 하고, 둘째, 거래의 내용 또는 제안에 설명된 조세혜택(advantage)이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셋째, 조세혜택이 해당 거래에 참여하는 주목적이거나 주요 목적 중 하나여야 함
 - 조세혜택은 조세면제, 과세이연, 기타 조세상의 의무 회피를 포함함
- 재무성 시행령에서 규정한 신고대상 거래의 유형은 표준화된 조세상품 등 7가지가 있음
 - 조장자가 있는 경우의 비밀거래(confidentiality where promotor involved)
 - 이는 합리적인 상황에서 조세혜택을 유발하는 계약거래를 조장한 자가 그 거래의 구성요소를 경쟁적 지위에 있는 다른 조장자나 국세청에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임
 - 계약거래의 실행으로 조세상의 혜택을 받을 것이 예상되며 관련된 거래의 구성요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거래를 공급하는 자가 공개할 의도가 없다면, 조장자는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함
 - 조장자가 받는 수수료 규모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조세혜택이 거래의 주목적인 경우에만 신고대상이 됨
 - 조장자가 없는 경우의 비밀거래(confidentiality where no promotor involved)
 - 이는 조장자 없이 납세자 스스로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고안한 거래로서 외부로부터 자문을 받지 않고 사내의 세무담당자가 조세회피 거래를 설계하고 실행한 경우의 거래임
 - 신고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거래에 참여하는 자가 거래의 구성요소에 대

한 비밀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둘째, 거래에 참여하는 자의 사업규모가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야 함

- 특별 수수료(premium fee)가 있는 계약거래
 - 고안된 계약거래의 중요한 특정 요소를 통해서 납세자가 조세상의 혜택을 향유하게 되는 경우 조장자나 내부 전략의 관련자가 납세자로부터 추가로 수령하는 보수가 있는 계약거래임
 - 조세전문가의 능력과 평판, 특정 전문가의 활용 등 조세전문가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나타난 보수는 특별 수수료에서 제외됨
- 시장외거래 조건(off market term)이 적용되는 거래
 - 금융기관인 조장자가 복수의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서 특별 수수료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는 거래를 시도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임
 - 시장외거래 조건이 적용되는 거래는 첫째, 금융기관이 조장자 역할을 하며, 둘째, 복수의 금융상품 거래를 통해 조세혜택을 얻을 수 있고, 셋째, 조세혜택이 부여된 금융상품의 가격이 공개된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임
 - 금융상품에는 대출, 파생상품, 특정 증권의 재구매계약, 주식 또는 지분의 대여계약, 사실상의 금전 대부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모두 포함됨
- 표준화된 조세상품(standardised tax products)
 - 표준화된 조세상품은 첫째, 조장자가 제작한 대량판매 상품으로 이용고객에 따라 특성화되지 않은 표준화된 계약이고 둘째,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합리적으로 해당 상품을 조사·분석했을 때 그 상품의 주목적이 조세상의 혜택을 얻는 데 있다고 판단되며 셋째, 2006년 8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판매된 상품이고 넷째, 법에서 예외로 규정한 경우가 아닌 상품을 말함
- 손실거래(loss schemes)
 - 손실거래는 부유한 개인소득자가 이용하는 다양한 손실 유발 거래를 파악하기 위하여 제정됨
 - 조장자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손실거래를 복수의 참여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여 고안한 거래로서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서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주된 목적이 소득세 또는 자본이득세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는 경우에 신고대상이 됨

○ 리스계약거래(leasing arrangement)

- 신고대상이 되는 리스계약거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리스로 분류된 설비 또는 기계장치로서 고가이면서 장기인 리스계약으로 세법에서 정한 추가요건을 갖춘 계약임

□ 표준화된 조세상품(standardised tax products)은 2006년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규정 (tax avoidance schemes regulation 2006, SI 2006/1543) 10과 11에 규정됨

- 표준화된 조세상품(standardised tax products)은 약정(arrangement)이 특정문서로 표준화되거나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으며, 이미 고객이 해당 거래를 시작했고, 그 거래가 표준화되거나 상당히 표준화된 상품을 말함
 - 계약(arrangement)이 특정문서로 표준화되거나 상당히 표준화된 경우라는 의미는 고객이 계약을 이행할 수 있고, 고객의 상황을 반영하여 계약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장자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형태를 의미함

□ 2006년 8월 1일 이전에 만들어져서 이용이 가능했던 약정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약정 등은 표준화된 조세상품의 예외로 인정됨

- 2006년 8월 1일 이전에 만들어져서 이용이 가능했던 약정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약정인 경우
- 해당 약정이 하나 이상의 플랜트나 기계에 대한 리스로 구성된 약정인 경우
- ITA 2007 Part 5에서 규정한 기업 투자 거래(enterprise investment scheme)에 의한 약정인 경우
- ITA 2007 Part 6에서 규정한 벤처 캐피탈 신탁(venture capital trust)을 사용하는 약정인 경우
- Finance Act 2000 schedule 15에서 규정한 법인 벤처 거래(corporate venturing scheme)에 적합한 약정인 경우

- ITA 2007 Part 7과 CTA 2010 Part 7에서 규정한 공동투자 비과세에 적합한 약정인 경우
- 1998년 개인 저축 규정(Individual Savings Account Regulations 1998)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계좌인 경우
- ITEPA 2003 Part 7의 chapter 6 및 schedule 2에 규정된 승인된 주식보상계획 (share incentive plan)인 경우
- ITEPA 2003 Part 7의 chapter 7 및 schedule 3에 규정된 승인된 주식옵션거래 (share option scheme)인 경우
- ITEPA 2003 Part 7의 chapter 8 및 schedule 4에 규정된 승인된 CSOP인 경우
- ITEPA 2003 schedule 5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적절한 옵션으로 허가된 경우
- FA 2004 section 150(2)에 규정된 등록된 연금거래인 경우
- ICTA 1988 section 615에 따라 영국에서 비과세로 허가된 해외 연금 거래인 경우
- FA 2004 schedule 34에 문단 1(5)에서 정한 의미를 가지는 영국 외의 국가에서의 연금 거래인 경우
- ITTOIA 2005 section 731이 적용되는 거래인 경우(개인 상해(injury damages)에 대한 기간 지급액)

□ 표준화된 조세상품 여부를 판정하는 test를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test 1: 해당 약정이 상품(product)인가?
 - 이 test는 계획 중인 약정이나 추가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잠재적 고객에서 제공되는 최종적인 상품(product)인 약정만을 신고대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임
 - 상품(product)은 고객의 상황에 따라 약정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약정이 표준화되어 있으며 신청양식을 조장자가 결정하고, 계약을 고객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 상품이 될 수 있는 약정은 거래구조 속에 고객이 특정하게 표준화된 거래를 하도록 약속되어 있음
 - 예를 들면 어떤 거래를 시작하는 고객은 특정 파트너십에 참가하도록 요구되며

특정 제공자로부터 특정한 대출을 받아서 특정 금융상품을 사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test 2: 해당 상품이 조세상품(tax product)인가?

- 이 test는 상품 중에서도 조세유인의 약정만을 신고대상으로 제한하기 위한 것임
- 이 test에서는 조세전문가(informed observer)에게 이 약정을 검토하도록 하여 해당 상품의 주된 목적이 조세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함
- 조세전문가는 독립적인 개인으로 해당 세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조세심판소(tribunal)의 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 반드시 관련 업계의 실무자일 필요는 없음

○ test 3: 해당 조세상품이 일반적으로 이용가능한 것인가?

- 이 test는 해당 상품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유로 판촉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잠재적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며, 해당 상품이 개인별로 맞춰진 것인지를 판단함

○ test 4: 2006년 8월 1일 이후에 처음으로 이용 가능한 조세약정이었는가?

- 이 test는 해당 상품을 어떤 사람이 2006년 8월 1일 이전에 이용할 수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함

○ test 5: 예외가 아닌 조세상품인가?

- 해당 상품이 앞서 설명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인 상품인지를 판단함

□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엔화스왑을 예로 든다면, 해당 거래는 시중 은행이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에 해당하며(test 1), 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파생상품의 비과세라는 조세상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며(test 2), 특정 고객에 맞춰진 상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하였음(test 3)

○ test 4와 test 5 해당 규정의 시행시기와 국가별 특례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음

다. 신고내용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에 이용되는 서식은 신고자 등에 따라 4가지의 종류가 있음
 - AAG1은 조장자에 의한 거래신고 양식임
 - AAG2는 해외 조장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고객에 의한 거래신고 양식임
 - AAG3는 조장자가 없거나 완전한 신고를 할 수 없는 법률가 등이 조장한 경우에 고객에 의한 거래신고 양식임
 - AAG4는 계속 신고 양식임

-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신고자, 신고거래의 대상 법규정 및 신고대상거래, 계약의 요약내용, 조세상 혜택의 내용 및 법규정을 기재함³²⁾
 - 신고자가 조장자인 경우 이름, 주소 등을 기재하고, 신고자가 고객인 경우 고객의 이름, 주소를 기재하고, 해외 조장자의 고객으로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외조장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함
 - 해당 거래구조를 신고하게 만든 법규정 및 해당 계약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함
 - 신고거래 유형이 제시되어야 하며, 신고거래 유형이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유형을 제시하면 됨
 - 영국 국세청이 해당 거래유형에 대한 가치를 모니터하는 것이 허용됨
 - 계약에 대한 요약 내용을 기재함
 - 내용에는 명료한 용어설명, 거래의 단계 등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인 법률 용어 및 기술 용어는 기재할 필요가 없음
 - 거래의 계획서, 그림 설명 등 형식적 제한 없이 계약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어떻게 조세상 혜택이 예상되는지와 이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을 기재함
 - 조세상 혜택에 근거가 되는 법규정을 기재함

32) SI 2004/1864, reg.3

- 법적인 조언에서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특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³³⁾
- 혐의거래에 대한 신고 시 신고자가 해당 거래에 대한 공동 조장자를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 거래의 자세한 내용을 신고할 필요가 없음³⁴⁾
 - 공동 조장자가 있는 거래에서 신고자가 자세한 거래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공동 조장자의 신고의무가 면제됨
 - 공동 조장자의 정보는 이름과 주소를 제공하면 됨
- 혐의거래의 조세상의 혜택이 여러 세목이나 부담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른 규정에 의해서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신고양식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음
-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하는 내용은 납세자의 성명, 신고대상 거래의 유형과 명칭, 혐의거래 등록번호임
 - AAG4 양식을 이용하며, 이는 1장의 간단한 서식임

라. 신고의무자 및 신고절차

- 조세회피 혐의 거래 신고의무자는 조장자(promotor)인데, 조장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3가지 test를 거치며 이 test를 모두 통과하는 경우에는 조장자가 아님
 - 세 가지 test는 benign test, non-adviser test, ignorance test가 있음
 - benign test는 그 사람이 세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당 약정(arrangement)이나 계획(proposal)의 구성 요소를 설계하는 데 책임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임³⁵⁾

33) SI 2004 s.314

34) SI 2004 s.308(4A)(a)&(4C)(a)

35) SI 2004/1865, reg.4(1), (2)

- 책임이 없다면 benign test를 통과하는 것임
 - non-adviser test는 그 사람이 해당 거래(scheme)의 설계에 관여했는지와 관련없이 세무상 조언을 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임³⁶⁾
 - 세무상 조언을 하지 않았다면 non-adviser test를 통과하는 것임
 -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이 test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법률회사나 회계사무소가 세무상 조언을 했는지가 판단대상이 됨
 - ignorance test는 그 사람이 해당 거래가 신고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거나 신고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임³⁷⁾
 - 신고를 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ignorance test를 통과하는 것임
-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기관이 신고의무자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신고의무자는 과세관청에 등록을 해야 함
- 다만, 조장자가 타국 거주자이거나 영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자인 고객이 등록함
 - 조장자는 신고 후 국세청으로부터 등록번호를 전달받고 이를 납세자에게 전달해야 함
 - 조장자는 서식 AAG1(Form AAG1; For completion by promoters of notifiable arrangements)을 사용하여 등록 기한까지 국세청의 반조세회피국(AAG)에 신고해야 함
 - AAG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8자리의 등록번호(SRN)를 조장자에게 교부해야 함
 - 조장자는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이를 전달하고 자문을 제공해야 함
 - 납세자는 조세혜택이 사라질 때까지 매년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등록번호를 기재한 서식 AAG4를 제출해야 함

36) SI 2004/1865, reg.4(1), (3)

37) SI 2004/1865, reg.4(1), (4)

- 조장자는 ‘거래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 날’과 ‘계약거래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계획이 최초로 실행되었음을 인지하게 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거래를 등록해야 함³⁸⁾
 - ‘거래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 날’은 계약거래의 실행과 관련된 신뢰성 있는 조세분석을 수행하고 계약거래의 각 진행단계를 발전시키는 행위를 한 때 또는 거래실행 여부, 기대되는 조세혜택, 계약거래의 주요 요소 및 그 이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잠재적 소비자에게 제안한 때를 의미함
 - 표준화된 조세상품의 경우 거래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 날이 실제 계약의 일부가 실행된 날보다 빠르게 됨

- 등록서식에 포함된 신고내용은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성 중 관련 항목, 계약거래 또는 제안서에 관한 내용 요약, 조세혜택을 가져오는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정보, 조세혜택과 관련된 법규정 등임

마. 미신고에 대한 제재

- 조세회피 혐의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조장자와 고객에게는 벌금이 부여됨
 - 조장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AAG에 혐의거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AAG가 발행한 등록번호와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자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됨
 - 벌금은 신고의무 해태가 일어난 최초 시점에 부여되는 것과 그 후의 신고의무 해태에 대하여 가산되는 것으로 구성됨
 - 미등록에 대한 최초 벌금은 1만파운드이고, 추가 벌금은 하루당 600파운드임³⁹⁾
 - 납세자에게 자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최초 벌금은 5천파운드이고, 추가벌금은 하루당 5천파운드임⁴⁰⁾

38) Finance Act 2004, Part 7, Sec. 308(1)~(2)

39) Guidance - Disclosure of Tax Avoidance Schemes, HMRC, 2012, 2, p.111

40) Guidance - Disclosure of Tax Avoidance Schemes, HMRC, 2012, 2, p.114

-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AAG에 혐의거래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등록번호를 함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됨
 - 혐의거래에 대한 최초 미등록, 추가 가산에 대하여 조장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됨
 - 소득세 신고 시 AAG4서식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미신고 시 100파운드, 2회 미신고 시 500파운드, 3회 이상은 1천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됨

Ⅲ.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제도

- 조세투자상품 예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호주의 사례를 살펴봄
 - 주요국 중 호주 외에는 투자상품 예규제도(Product Ruling)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없음

-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조세혜택의 확실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자가 과세당국에 예규를 신청하는 제도로 과세당국은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투자상품 예규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형태임
 - 일반에 공개된다는 측면에서는 통칙과 유사한 형태임
 - 통칙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행정청 내부를 규율하는 규정일 뿐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을 가지는 법규가 아니므로, 법원이나 일반 개인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3668 판결)에 따라 법적 구속력은 없음
 -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측면에서는 예규와 유사한 형태임
 - 예규는 신청자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투자상품 예규와 유사한 점이 있고 특정집단이나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 호주의 예규제도⁴¹⁾

- 호주의 조세절차법 1953(Taxation Administration Act 1953, TAA)에 따르면 예규(Ruling)는 공적예규(Public Ruling)와 사적예규(Private Ruling), 구두예규(Oral Ruling)가 있음⁴²⁾
 - 세 가지 예규 모두 국세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음

- 공적예규란 세무당국(revenue body)이 세법조항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임⁴³⁾
 - 우리나라의 기본통칙, 해석편람, 훈령, 예규 등과 같이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기준을 구체화한 공적예규(Public Ruling)는 호주에서 세무당국에 대한 구속력이 있음
 - 조세행정, 징수, 위험관리 수단, 조세피난처, 사업자번호 등에 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룸⁴⁴⁾
 - 공적예규는 특정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의 모든 납세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별납세자가 공적예규에 대해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음⁴⁵⁾
 - 호주의 공적예규(Public ruling)는 상품 예규(Product Ruling)와 집단별 예규(Class Ruling)가 있음⁴⁶⁾
 - 상품 예규(Product Ruling)란 상품(product)에서 주장하는 조세상의 혜택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해석(Ruling)임
 - Product Ruling PR 2007/71은 상품 예규(Product Ruling)에 대한 운용을 설명하

41)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 호주편』, 2012, pp. 245~249를 요약하여 재정리

42)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ld," 2012, pp. 1,325~1,330

43) public ruling에 대한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공적예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통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여기서는 '공적예규'로 통일하여 사용함

44) 더 자세한 내용은 TR 2006/10참조

45)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 호주편』, 2012, p. 248

46)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ld," 2012, pp. 1,326~1,328

고 있음

- 사적예규는 우리의 민원·질의회신과 유사하게 개별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개별 납세자의 특정한 사실관계에만 적용되는 세법령의 해석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세무당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
 - 상품 예규(Product Ruling)를 신청한 경우에는 특정 상품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과세상의 결과를 위한 사적 예규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 사적예규는 공적예규와는 달리 납세자의 질의에 대응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해당 납세자에게 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국세청의 법률 해석을 정리한 것임⁴⁷⁾

- 구두예규는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발생하며, 납세자는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없음
 - 납세자의 의견과 다를 경우 별도로 사적예규를 신청할 수 있음

〈표 Ⅲ-1〉 호주의 예규 형태 비교

	사적예규	공적예규	구두예규
신청	납세자, 납세자의 세무대리인 또는 법정대리인	일반적 또는 특정한 절세 전력과 관련된 모든 납세자 집단(all entities) 또는 특정 계층(class of entities)	납세자, 납세자의 법정대리인
신청서	서면	서면	구두요청
공개	사적예규 등록부에 등록/출판되고 국세청사이트에 등재	공적예규 등록부에 ID 번호 등록/출판되고 국세청 관보, 국세청 legal database에 게재	-
반대의견	납세기일 전에 반대의견 표명가능	반대할 수 없으나, 사적예규 신청가능	반대할 수 없으나, 사적 예규 신청가능

자료: 호주 국세청 자료의 재정리

47)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 호주편』, 2012, p. 246

2.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제도(Product Ruling)

가. 개요

- 1990년대부터 호주에서 조세혜택을 이용한 금융상품 등이 다수 판매되어 과세관청에 많은 부담을 야기하자, 이에 대처하고 금융상품거래에 대한 잠재적 참여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고자 1998년 ‘투자상품 예규(Product Ruling)’ 제도를 도입함
- 실제 호주 국세청이 투자상품 예규(Product Ruling)를 제공한 사례를 통하여 상품 예규의 방식을 이해하고자 함
 -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1998~2012년에 걸쳐 1,350개의 상품별 예규가 제시되고 있음
 - 1998년 5건, 1999년 104건, 2000년 119건, 2001년 177건, 2002년 147건, 2003년 82건, 2004년 117건, 2005년 119건, 2006년 165건, 2007년 105건, 2008년 73건, 2009년 61건, 2010년 30건, 2011년 25건, 2012년 21건
 - 위 상품 예규가 전부 금융상품에 대한 것은 아님
- 투자상품 예규는 호주의 공적예규 중 하나로 특정 상품의 조세혜택을 공식적으로 규정하여 발행하는 예규로 볼 수 있음
 - 국세청은, 투자상품 예규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특정 상품에 대한 조세상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품에 조세상 혜택이 있는지를 세법에 따라 정확히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공지하고 있음
 - 따라서 투자상품 예규는 국세청이 투자상품에 포함된 과세 사항에 대한 편향되지 않은 판단을 나타낼 뿐이며, 상품을 판매하는 기획자나 관련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
- 투자상품 예규는 투자상품의 조세상 혜택과 관련된 규정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규정은 소득세, 의료보험부담금(Medicare levy), 부가급여세(Fringe benefits

tax), 프랭킹 세금공제(Franking deficit tax), 원천징수세, 석유자원렌트세, 와인세, 고
급자동차세, 소비세 등을 모두 포함함

- 프랭킹 세금공제는 프랭킹이라는 호주의 독특한 임퓨테이션 제도를 이용하는 배
당세액공제와 관련된 세금임⁴⁸⁾

□ 국세청의 투자상품 예규의 신청부터 공표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투자상품 예규의 신청, ② 국세청의 답변정리, ③ 투자상품 예규의 초안 통보,
④ 신청자의 동의, ⑤ 국세청의 투자상품 예규 공표의 과정을 거침
- 투자상품 예규의 신청은 특정 거래의 관련자나 관련 가능성 있는 자가 공식적인
국세청의 견해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함
- 투자상품 예규의 초안을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투자상품 예규의 공식 발표
전에 신청자가 재고를 요청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임
- 신청자가 사용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Product Ruling Agreement on Terms of
Use'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침
 - 신청자가 투자상품 예규의 사용 조건에 동의하며, 특정거래가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는 확답과 예규에 언급된 모든 당사자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침
- 상품 관련자나 기획자 등은 공표된 투자상품 예규를 첨부하여 투자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48) 더 자세한 내용은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호주편』, 2012, p. 133 참조

나. 신청

1) 신청자

- 투자상품 예규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상품의 참여자 즉, 상품 기획자 및 판매자 (promoter)임⁴⁹⁾
 - 이러한 신청자는 주로 managed investment scheme의 관리자나 경영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음⁵⁰⁾

2) 신청서식 및 내용

- 투자상품 예규는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세청이 관련 특정거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특정거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⁵¹⁾
 - 국세청은 신청자가 투자상품 예규에 대한 신청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정보를 완전 공개(The highest level of disclosure)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상품에 관한 정보가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는 예규신청을 하는 경우에 국세청의 담당자(case officers)는 예규(Ruling)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지 않음
- 부록 3에 첨부된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설명하면 체크리스트는 Part 1, Part 2, Part 3 과 맹세(declaration)로 구성되어 있음
- Part 1은 신청을 위한 일반사항으로 Section A~C로 구성되어 있음
 - Section A는 신청자(혹은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신청자와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함

49) PR 2007/71

50) <http://www.ato.gov.au/businesses/content.aspx?menuid=0&doc=/content/528.htm&page=4&H4>

51) <http://www.ato.gov.au/businesses/content.aspx?menuid=0&doc=/content/6454.htm&page=3&H3>

- 대리인이 있는 경우, 서면동의서를 받았는지 체크하도록 함
- Section B는 신청자가 신청하는 예규의 기본 내용을 담고 있음
 - 신청자의 질문과 신청자가 신청하는 해석에 대한 관련 세법을 기술하도록 함
 - 신청서류가 신청자에 의해 제출되는 것인지 체크하도록 하는데, 이는 상품 예규(Product Ruling)가 공적예규(Public Ruling)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신청될 수는 없음
- Section C는 신청하는 예규의 상태와 관련 규정을 제시하도록 함
 - 신청자가 신청하는 상품 예규에 대한 이의(objection), 소송(appeal), 세무조사(review or audit)가 예정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함
 - 신청자가 신청하는 상품 예규와 관련하여 이중과세방지협약(double taxation agreement)이 있는지를 체크하도록 함
 - 신청자가 신청하는 상품 예규와 관련된 현재의 세법규정이나 상품 예규를 기재하도록 함
 - 신청자가 신청하는 상품 예규와 관련된 사적예규(private rulings)나 행정지침(administrative binding advice)을 기재하도록 함
- Part 2는 신청하는 거래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 Section D~K로 구성되어 있음
 - Section D는 거래구조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 1~2장 정도로 상품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① 거래내용을 시간적 순서로 배열하여 상세히 기재하고, ② 해당 거래의 예상기간과 해당 거래에 참여하는 거래자의 최소기간, ③ 관련기업 및 관련성을 기재하도록 함
 - 특정거래(scheme)의 개요를 설명하는 그림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① 거래내용을 시간적 순서로 배열하여 상세히 기재하고, ② 해당 거래의 예상기간과 해당 거래에 참여하는 거래자의 최소기간, ③ 관련기업 및 관련성을 기재하도록 함
 - 거래구조에 특정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체크하도록 하고, 관련 항목이 없는 경우 이 거래구조에서 제공되는 상품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항목이 있는 경우 이 거래구조에서 언제, 어떻게 각각의 항목이 작용을 하는지 기재하도록 함

- ① 차입금이 자본을 보호하는 요소를 가지는지
 - ② 재투자약정(사건 종결 시 혹은 일정기간 경과 후 새로 시작하거나 재투자)을 포함하는지
 - ③ 거래약정(증권 거래나 매각에 참여)을 포함하는지
 - ④ 연장약정(투자종결 시 유사한 조건의 다른 재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 ⑤ 증권 신탁인지
 - ⑥ 콜옵션이나 풋옵션을 포함하는 파생상품인지
 - ⑦ 연계 혹은 분리 대출(투자목적과 사적목적으로 개설된 계정이나 보조계정을 가진 대출)인지
 - ⑧ 부동산투자인지
 - ⑨ 보증약정이 있는지
 - ⑩ CFD⁵²⁾인지
 - ⑪ 마진대출상품(margin loan facilities)인지
 - ⑫ 선지급(prepayment facilities)조건인지
 - ⑬ 어음, 채권, 사채 등(notes, bills, bonds, debentures)인지
 - ⑭ 투자와 연계된 모기지(mortgage linked investments or loan facilities)인지
 - ⑮ 스왑인지
 - ⑯ 콜리(collar)⁵³⁾인지
 - ⑰ 미이행계약(executory contract)인지
 - ⑱ 구조적 복합신탁(hybrid trust in its structure)인지
 - ⑲ 이연구매계약(deferred purchase agreement)인지
 - ⑳ 국제거래(international transactions)인지
- 이 거래구조와 관련된 모든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하는데, 계약서에는 신탁약정서, 대출계약서, 보조적인 계약서, 자산인수 관련 계약서, 거래구조로부

52)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실물 상품이나 증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일에 차이나는 부분만을 현금지급하는 약정을 의미함

53) Collar는 특정범위의 기초자산에 + 혹은 - 수익을 제한하는 옵션전략임

- 터 발생하는 이익분배를 통제하는 약정서 등이 포함됨
 - 이 거래구조에 참여자, 금융설계사 등에게 제공된 금융상품 판매를 위한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함
 - 투자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면자료를 제공해야 함
- Section E는 회사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투자를 위한 신청서와 제공해야 하는 서류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함
 - 회사법(Corporation Act 2001)의 특정사항을 충족하는지 체크하여야 하는데, 특정사항은 회사법의 요건 중 관리되어지는 투자 거래구조인지(managed investment scheme), 등록을 요구하는 거래구조인지, 유관기관인 호주금융서비스(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AFS)의 허가를 얻었는지를 검토함
 - 회사법에서의 재산 거래구조를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거래구조가 어디에서 관리되는 투자 거래구조인지, 재산 거래구조에 참여자의 리스 소유나 허가권이 포함되는지를 기재하도록 함
 - 특정 재산의 무엇을 참여자가 받게 되는지, 참여자의 권리가 해당 재산에 대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기재하도록 함
- Section F는 연금펀드규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금융상품은 연금펀드를 위해서 판매되는 것인지 체크하도록 함
 - 이 거래구조에 국민연금펀드를 실행하는 것이 신청자가 판단하기에 국민연금 산업법(Superannuation Industry Act 1993)하에 국민연금펀드를 실행에서 세무상 도움을 위한 것인지 체크하도록 함
- Section G는 비용에 대한 것임
 - 이 거래구조의 기간에 걸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fee)가 누구에게 언제 지불되는 것인지 기재하도록 함
 - 이 거래구조의 기간에 걸쳐 25번 질문에서 식별되지 못한 다른 모든 비용(expenses)이 누구에게 언제 지불되는 것인지 기재하도록 함
 - 위에서 서술된 수수료와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권이 이용 가능한지 기재하도록 함
 - 참여자가 수수료와 비용의 지불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참여자에게 돌아오는 결

과가 무엇인지 기재하도록 함

- 참여자가 수수료와 비용을 이후 기간으로 이연하는 것이 가능한지 체크하도록 함
- 각각의 수수료에 대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와 상품을 기재하도록 함

○ Section H는 투자금액에 대한 것임

- 최소 투자금액(subscription), 잠재적 참여자 수,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해에 참여자가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액을 기재하도록 함
- 이 거래종결 후에 참여자가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체크하도록 함
- 신청자와 관련기업이 얻은 수익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함
 - ① 신청자와 관련 금융회사는 참여자가 요구하는 발생된 비용을 동일하게 부담하는지
 - ② 신청자와 관련 금융회사 또는 관련 회사들 간에 거래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킬 수 있는지
 - ③ 신청자와 관련 회사들이 얻은 수익이 동일한 연도에 수익-비용이 대응되는지 체크하고 대응되는 경우 그 금액별 시기를 기재
 - ④ 어떤 종류와 금액이 신청자와 관련기업의 수익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 ⑤ 신청자와 관련기업의 계약이 절세를 목적으로 하였거나 절세의 효과가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런 경우 자세한 내용을 기재
 - ⑥ 이 거래구조에서 신탁자와 관련 수탁자가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하고, 수익적 소유자의 이름을 포함하여 기재
- 이 거래구조의 거래기간 전체에 걸쳐서 신청자를 위한 이익과 손실의 예산과 현금흐름 예상액을 기재하도록 함
- 단일 참여자를 위한 세전, 세후의 현금흐름 예상액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 경우 다음의 가정을 하게 됨
 - ① 투자자는 최고한계세율을 부담함
 - ② 투자자는 최소투자금액을 지불함
 - ③ 투자에 대한 수익은 과거 실적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일반적이지 않거나 대재앙이 된 사건은 제외함

- ④ 투자자는 해당 상품의 종료일까지 투자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종료일을 경과하여 투자를 유지할 수도 있음

○ Section I는 자금조달에 대한 것임

- 신청자나 관련 회사가 참여자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 거래구조와 관련이 없는 외부 자금조달처에 참여자를 소개하는지에 대하여 체크하도록 함
- 대출계약서와 그 외의 자금조달을 위한 문서의 복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 국제적인 금융거래 구조에서는 참여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금융업자의 증명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증명으로는 대차대조표, 연결재무제표, 신용장 등이 있음
- 우선 금융업자는 참여자를 위해 자금조달을 제공하기 위해 제시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함
- 참여자의 대출이 소구권이 없는(non-recourse) 대출인지, 제한적 소구권(limited recourse)을 가지는 대출인지, 이연된 소구권(deferred recourse)을 가지는 대출인지를 체크하도록 함
- 대출기간을 서술하도록 함
- 참여자가 금융업자에게 대출약정 중 특정 기간에 빌린 자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지 체크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금융업자가 참여자가 채무불이행을 하는 경우에 빌려준 돈을 상환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상업적 회수활동을 할 수 있는지 체크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어떤 목적으로 조달된 대출금이 사용될 수 있는지 기재하도록 함
- 참여자가 해당 대출금을 축소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고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함

○ Section J는 사례에 대한 것임

- 신청자가 제기한 다음의 법률적 질문과 이슈에 대하여 제시하도록 함
 - ① 해당 질문 및 이슈와 관련된 규정해석에 대한 법의 목적 및 권한 있는 당국의 지지가 있었는지
 - ② 법의 목적 및 권한 있는 당국의 지지에 의하여 채택된 해석과는 반대되는 가

능한 논쟁이 있는지

③ 위원들이 필요한 사실관계와 법을 고려할 때 알아야만 하는 정보의 원천이나 관련 사실들, 주요 다른 자료가 있는지

④ 적용과 관련된 행정규정이 있는지

- 고려되어야 하는 법적, 정책적, 실무적, 상업적 이슈를 제시하도록 함
- 해당 해석(ruling)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 거래구조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는지 서술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함
-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의 정보와 이해에 근거하여 소득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ITAA 1936) 제IVA장의 8개 항목에 대하여 완전하게 보고하였는지 기재하도록 함

① 거래구조를 만든 방법

② 거래구조의 형식 및 본질

③ 해당 거래구조가 시작된 시기와 해당 거래구조가 실행되는 기간

④ 해당 거래구조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결과

⑤ 해당 거래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관련 납세자의 재무상 지위의 변화

⑥ 해당 거래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다른 사람들의 재무상 지위의 변화

⑦ 관련 납세자나 다른 관련자에 대한 재무상 지위 외의 변화

⑧ ⑥에서 고려된 사람과 관련 납세자 간에 관련성이 있다면 그 본질

- 이 거래구조의 안을 상품별 예규(Product Ruling)에 대한 규정 및 해설에 제공해야 함

○ Section K는 필요한 문서의 요청에 대한 것임

- 요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 내용이 빠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는 내용임

Part 3은 빠진 항목을 기재하고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기재하도록 함

선서(declaration)는 제공한 정보에 대해 거짓이 없음을 신청자가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하고 있음

3) 신청서 제출시기

- 투자상품 예규의 신청서 제출시기는 가능하면 3월 3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음
 - 호주의 과세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이므로 국세청은 Product Ruling을 충분히 심사하고 발행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가능한 3월 31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고 있음

4) 신청가능 투자상품

- 투자상품 예규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상품(Product)은 다수의 사람이 수수료 등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 또는 참여하는 투자상품을 일컬음
 - Investment scheme, Tax effective investment, Financial scheme, Insurance scheme 등의 형태인 상품을 일컬음⁵⁴⁾
 - 구체적으로 투자상품 예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은 금융뿐만 아니라, 산림, 농업, 광산, 영화, 과수, 견과, 올리브 산업의 투자로 특화되어 있으며, 국세청 사이트에 상품별로 투자상품 예규의 결과를 기재하고 있음

다. 투자상품 예규의 결과

- 투자상품 예규의 결과에 대한 실제 사례는 부록 1에서 제시하였으며, 국세청이 발표한 예규의 세부구조는 6개의 부분과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음
 - 첫째, 상품 예규가 상업적인 성공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문단
 - 둘째, 상품별 예규를 사용하기 위한 요건
 - 셋째, 상품 예규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에 대한 서술
 - 개요, 적용대상자 등을 제시
 - 넷째, 시행일
 - 다섯째, 상품예규의 내용

54) PR 2007/71 p. 3

- 여섯째, 거래구조
- 부록에는 관련법령 및 목차의 구성내용, 참조법령 등이 제시

- [부록 1] 금융상품 예규의 결과 사례를 보면 호주에서 2012년에 발행한 투자상품 예규 중에서 ‘Commonwealth Bank Vantage + Series 2’에 대한 결과를 요약 제시함
 - 해당 상품인 CBV+ Series 2가 이연구매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
 - 호주 세법(ITA 1936) Part Ⅲ에 Division 16E에 따르면 채권수익의 과세시기는 수익발생 시인데, 정기적인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원금을 보장하는 채권의 경우 불리한 점이 발생함
 - 이 채권은 발행 시에 최종적인 수익이 확정되지 않아서 수익을 계산하기 어려움
 - 12개월 이상 보유하는 투자자산에 대한 50% 자본이득세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한계세율을 적용함
 - 이에 따라 호주 기업들은 Division 16E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이연구매계약(DPA)을 이용하고, 이 경우에는 발생주의 계산을 피할 수 있고 자본이득세 50% 면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

라. 예규의 효력

1) 예규의 이용자

- 투자상품 예규는 특정 상품의 거래에 대해 조세혜택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일종의 유권해석으로 해석을 요청한 자에게만 예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품을 거래하거나, 잠재적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면서 적용됨
 - 투자자는 투자상품 예규에서 정한 기간 동안 거래계약을 한 자이며, 공적예규인 투자상품 예규가 적용되므로 해당 상품에 대한 과세상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사적예규(Private Ruling)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
 - 투자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호주의 금융서비스개혁법 2001(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 FSRA 2001)은 투자자를 전문금융투자자(wholesale client)와 일반금융투자자(retail client)로 구분하고 있음⁵⁵⁾

- 전문금융투자자는 정보를 획득하고 금융거래에 내포된 위험을 평가할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금융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금융상품 소비자보호 규정은 원칙적으로 일반금융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보고 있음⁵⁶⁾
-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는 일반금융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됨

– 잠재적 투자자는 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임

- 상품 예규는 국세청(Commissioner)을 법적으로 구속하며, 예규를 적용받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투자상품 예규 신청 시 포함된 상세사항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됨

2) 예규의 발행자

- 국세청장은 특정 상품과 관련된 투자상품 예규의 발행 여부 등을 결정할 재량권을 갖고 있음⁵⁷⁾
 - 국세청장의 이러한 재량권은 유권해석 체계를 보강하는 정책적 역할을 수행함
 - 투자상품 예규는 해당 상품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 다수 납세자들의 광범위한 문제를 국세청장이 유권해석의 형식을 이용하여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
 - 국세청장은 가능한 많은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적시에 예규에 대한 결과를 제공함

55) 부록 2 참조

56) FSRA §761조(1)~(3)

57) TAA Schedule 1 §358

3) 효력

- 예규를 적용받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투자상품 예규 신청 시 포함된 상세 사항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됨

- 투자상품 예규는 특정 상품 거래관련자에게 투자상품에 대하여 확실성을 제공함
 - 확실성은 국세청장이 조세혜택에 대하여 확인했고, 거래의 설명 정보와 일치하도록 거래가 실행되는지 등에 대한 것임
 - 국세청이 투자상품 예규를 공표(publish and notice)해야만 비로소 투자상품 예규가 국세청에 대한 구속력을 가짐

- 투자상품 예규는 예규 대상이 된 상품거래에 대해서만 국세청에 대한 구속력이 있으며, 실제 상품이 예규에 언급된 계약 내용과 다르게 거래된다면 투자상품 예규의 결과는 해당 거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상품거래 계획자와 관련자 모두 투자상품 예규에 포함된 내용대로 투자상품을 거래해야 할 책임이 있음
 - 상품거래 관련자가 기존 상품을 기존과 다르게 운영하면서 해당 상품에 대한 투자상품 예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품거래 관련자는 예규 신청 전에 변경 내용 등을 포함한 서류를 서면으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거래 변경의 정도 및 내용, 변경 이유, 거래 변경으로 인한 결과 요약임
 - 다만, 상품거래 관련자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품거래 관련자가 그 상품거래의 변경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공지하여야 함

- 투자상품 예규는 예규에서 기술하고 있는 유형의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예규 공표일 이후에 개시되는 거래에만 적용됨
 - 투자상품 예규 발표일 이전에 해당 상품에 투자한 자는 투자상품 예규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음

- 투자상품 예규는 조세 혜택 결과 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투자상품의 상업적 성공, 투자상품의 수수료, 부담금 및 기타 비용의 합리성, 투자상품의 결과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상품의 상업적·재정적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투자상품 예규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상품의 잠재적 참여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함
- 신청 시 제시된 사실관계와 실제 해당 상품의 사실관계에 주요한 차이가 있어 기존 예규와 다른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은 발표된 투자상품 예규를 철회하고 동 예규에 기초하여 청구된 공제혜택을 부인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조장자에 대한 제재 등을 추진할 수 있음

마. 예규 적용에 대한 제재

- 투자상품 예규와 관련된 조장자의 벌과금(prompter penalty laws)은 TAA Schedule 1 §290에 따름
 - 벌과금은 조장자가 계약이나 거래와 관련하여 수령하거나 수령할 금액의 2배 또는 개인의 경우 5,000 penalty units(법인의 경우 25,000 penalty units) 중 큰 금액임
 - 형법에 따라 1 penalty units은 110호주달러임
 - 호주 연방법원은 투자상품 예규와 관련된 조장자의 벌과금 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함
 - 조장자가 거래와 관련하여 수령하거나 수령할 금액
 - 벌과금의 억제 효과
 - 계약 참여자들의 손실 상당 금액
 - 계약 위반의 성질과 범위
 - 국세청과의 협력 정도

- 조장자의 벌과금 규정은 조세회피와 탈세 상품에 대한 판매와 홍보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임
 - 또한, 투자상품 예규에 기록된 사항과 실질적으로 다르게 상품이 시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

- 국세청장은 조장자의 벌과금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조세절차상 PS LA 2008/7 및 PS LA 2008/8 2개의 행정지침을 발행함⁵⁸⁾
 - 국세청은 투자상품 예규의 신청자와 잠재적 참여자는 2개의 행정지침을 참고하여 조장자의 벌과금 규정의 운영방법과 적용의 예외 등에 대하여 인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58) Law Administration Practical Statement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일종의 행정지침임

IV. 제도 비교 및 결론

1. 개요 및 목적

- 주요국에서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인 과세자료가 확보 가능한 제도로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를 살펴보았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는 미국, 영국이 있고, 투자상품 예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는 호주가 있음
 - 양 제도를 모두 도입한 국가는 없었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제도를 설계한 목적은 다르지만 ① 금융상품 거래가 발생하기 이전에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② 조장자인 금융기관 등이 국세청에 해당 상품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짐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조세회피 거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는 반면,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절세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에 대하여 절세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양성화된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세회피 거래를 줄이고자 하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짐

- 도입시기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984년, 2004년에 해당 제도를 도입하였고, 호주는 1998년에 해당 제도를 도입하였음
 - 미국은 1984년에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2004년에 가산세를 강화하고 등록의무자를 확대하여 해당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영국도 2004년 8월부터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와 부가가치세에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하여 해당 제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 호주는 1998년 투자상품 예규제도를 도입하였음

2. 제도의 활용 정도

- 각국의 제도가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정보 수집을 위하여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신고건수 및 예규 발행건수를 비교하였으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으며 매년 일정 정도의 신고건수가 유지되고 있어서 각국에서 해당 제도들이 일정한 역할은 하고 있다고 판단됨
 - 영국은 2004년 8월부터 2012년 3월 말까지 누적으로 3,202건의 신고가 있어서, 연평균으로 380건의 신고가 있었음
 - 호주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350건으로 연평균 90건의 예규발행이 있었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투자상품 거래 외에도 많은 혐의거래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서 투자상품 예규제도보다는 신고건수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모든 제도가 시행 초기에 비하여 그 건수가 줄어들고 있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제도를 운영하는 영국의 경우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기준으로 제도 시행 초기 500~600건에 달하던 신고건수가 최근에는 100~150건 정도로 줄어들었음
 - 투자상품 예규제도를 운영하는 호주에서는 시행 후 꾸준히 100건 이상 발행건수를 유지하다가 제도 시행 10년 이후부터는 점차 예규 발행건수가 줄어들어 2010년 이후 20~30건 정도 발행함

3. 신고의무자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의 신고의무자는 모두 금융기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경우와 투자상품 예규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호주는 모두 사전신고는 거래를 판매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고객인 납세자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세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만 직접 신고하도록 하여 중복적인 신고를 하지는 않음
 - 특정한 경우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이 영국 기업이 아닌 경우 등 금융기관이 신고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신고의무의 강제성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경우 해당 상품 거래에 대한 신고가 강제되는 반면,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자발적으로 예규를 신청하는 제도로 강제되지 않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과세관청이 조세회피 거래를 억제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인 금융기관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여 신고를 유도함
 -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투자상품에 대한 조세혜택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신청자인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예규를 신청하고 해당 예규를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음

4. 신고내용

- 미국에서 조세회피 혐의거래를 조장자(거래를 조직한 자 또는 실질적 자문을 한 자)와 납세자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장자와 납세자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신고를 함

- 조장자는 본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실질적 자문의 조장, 판매, 실행, 조언 등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해당 거래구조와 관련된 법규정, 기대되는 조세 혜택 유형, 해당 계약의 상세한 내용을 기재함
 - 납세자는 납세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신고대상 거래의 유형과 명칭, 혐의거래 등록번호, 중요 조장자에 대한 정보(이름, 주소지), 사실관계와 기대되는 조세 혜택의 내용 및 금액 추정치를 기재해야 함
- 영국도 조세회피 혐의거래를 조장자와 고객이 둘 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장자는 상세한 내용을 신고하는 데 비하여 납세자는 조장자가 부여받은 등록번호만을 신고하도록 함
- 조장자는 신고자, 신고거래의 대상 법규정 및 신고대상거래, 계약의 요약내용, 조세상 혜택의 내용 및 법규정을 신고해야 함
 - 납세자는 납세자의 성명, 신고대상 거래의 유형과 명칭, 혐의거래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 1장의 간단한 서식임
- 호주에서 예규신청이 신청서에 포함하는 내용은 조세회피 혐의거래와 유사하지만, 보다 상세한 내용을 포함함
- 신청자에 대한 정보, 신청자의 질문과 신청자가 신청하는 해석에 대한 세법의 내용, 신청하는 예규와 관련된 예규, 거래구조 등 거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특정 유형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거래 참여자 입장에서의 권리 및 의무, 지불 수수료의 내용, 고려되어야 하는 법적, 정책적 이슈 등이 포함됨

5.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

- 금융상품의 경우, 영국은 표준화된 조세상품의 유형으로 조세회피 혐의거래의 대상이 되고, 미국은 국세청이 고시한 거래나 관심거래로 조세회피 혐의거래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특정 상품이나 업종 등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규정으로 금융상품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특정 금융상품이 조세회피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특정 거래를 해당 거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어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미국은 ① 투자회사법(RIC)에 의한 투자회사와 그 회사가 95% 이상 소유한 투자중개회사는 고시된 거래를 제외한 기타 범주의 거래 및 ②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리스거래를 신고 제외거래로 규정함

□ 영국은 좀 더 상세하고 다양하게 신고제외 대상거래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미국과 같이 리스거래나 투자회사거래가 포함됨

- 2006년 8월 1일 이전에 만들어져서 이용이 가능했던 약정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약정인 경우
- 해당 약정이 하나 이상의 플랜트나 기계에 대한 리스로 구성된 약정인 경우
- ITA 2007 Part 5에서 규정한 기업 투자 거래(enterprise investment scheme)에 의한 약정인 경우
- IITA 2007 Part 6에서 규정한 벤처 캐피탈 신탁(venture capital trust)을 사용하는 약정인 경우
- Finance Act 2000 schedule 15에서 규정한 법인 벤처 거래(corporate venturing scheme)에 적합한 약정인 경우
- ITA 2007 Part 7과 CTA 2010 Part 7에서 규정한 공동투자 비과세에 적합한 약정인 경우
- 1998년 개인 저축 규정(Individual Savings Account Regulations 1998)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계좌인 경우

- ITEPA 2003 Part 7의 chapter 6 및 schedule 2에 규정된 승인된 주식보상계획 (share incentive plan)인 경우
- ITEPA 2003 Part 7의 chapter 7 및 schedule 3에 규정된 승인된 주식옵션거래 (share option scheme)인 경우
- ITEPA 2003 Part 7의 chapter 8 및 schedule 4에 규정된 승인된 CSOP인 경우
- ITEPA 2003 schedule 5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은 하지만 이상의 적격한 옵션으로 허가된 경우
- FA 2004 section 150(2)에 규정된 등록된 연금거래인 경우
- ICTA 1988 section 615에 따라 영국에서 비과세로 허가된 해외 연금 거래인 경우
- FA 2004 schedule 34에 문단 1(5)에서 정한 의미를 가지는 영국 외의 국가에서의 연금 거래인 경우
- ITTOIA 2005 section 731이 적용되는 거래인 경우(개인 상해(injury damages)에 대한 기간 지급액)

6. 가산세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조장자의 등록의무, 조장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납세자의 신고의무로 구성되고,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조장자가 예규를 신청한 바와 같이 실행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 미국은 조장자 등이 혐의거래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고객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거래에 참여한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및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함
 - 영국은 조장자 등이 조세회피 혐의거래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고객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및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시 등록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함
 - 호주는 투자상품 예규를 예규에 기록된 사항과 실질적으로 다르게 상품을 시행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함

- 미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관련된 가산세의 특징은 영국과 달리 고의성에 따라 가산세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조세회피 혐의거래를 중복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특징이 있음
 - 미국은 조장자 등이 혐의거래를 등록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특정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벌금을 달리하고, 그 외의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고의성이 있는 경우 20만달러와 총소득금액의 70% 중 큰 금액, 고의성이 없는 경우 20만달러와 총소득금액의 50% 중 큰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함
 - 미국은 조장자 등이 등록번호를 고객에게 제시하지 않은 경우 건당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거래참여자인 고객이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건당 2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국세청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되면 1일당 1만달러씩 벌금이 부과됨
 - 신고대상 거래의 유형과 명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1만~20만달러의 정액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정액을 넘거나 사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가산세를 부담함

- 영국의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관련된 가산세의 특징은 일자별 가산세를 도입하여 의무의 조기 이행을 시도한다는 점임
 - 조정자의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는 1만파운드를 기본으로 지연 등록 하루당 600파운드가 가산됨
 - 납세자에게 자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5천파운드이고, 1일당 5천파운드가 가산됨
 -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시 등록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는 1회 100파운드, 2회 500파운드, 3회 이상은 1천파운드임

-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제도의 가산세는 예규신청 시 제공한 정보와 다른 사실로 해당

상품을 시행한 것에 대한 가산세임

- 조장자가 계약으로 수령하는 금액의 2배와 55만호주달러(법인의 경우 275만호주 달러) 중 큰 금액임

-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제도의 가산세는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가산세와는 달리 그 금액이 큰 것이 특징인데, 이는 투자상품 예규가 공적예규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무 불이행에 대해 중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7. 신고시기

- 미국은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1회에 한하여 국세청에 등록하고, 해당 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은 매년 소득세 신고 시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서식을 국세청에 제출함
 - 조세회피 혐의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는 시기는 조장자의 경우 고객에게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판매를 제안하기 전이며, 실질적인 자문을 한 자의 경우 자문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함
 - 혐의거래의 등록을 해야 하는 자는 조장자나 실질적인 자문을 한 자임
 - 등록자가 고객에게 등록번호 등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시기는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임
 - 혐의거래 상품을 구입한 납세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시기는 소득세를 신고 하는 시기임

- 영국은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거래의 실행 가능일 후 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국세청에 등록하고, 등록 후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고객은 매년 소득세 신고 시 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서식을 국세청에 제출함

- 조세회피 혐의거래에 대해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는 시기는 ‘거래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 날’과 ‘계약거래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계획이 최초로 실행되었음을 인지하게 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5일 이내임
 - 표준화된 조세상품의 경우에 ‘거래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 날’은 실제 고객과의 계약일보다 빠르게 됨
 - 등록자가 고객에게 등록번호 등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시기는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30일 이내임
 - 혐의거래에 참여한 납세자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시기는 소득세를 신고하는 시기임
- 미국과 영국은 조세회피 혐의거래 조장자의 등록, 조장자가 고객에게 고지할 의무, 고객이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여 조세회피 혐의거래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유사함
- 상세규정에 차이는 있지만, 고객에게 판매되기 전이나 판매 초기에 해당 거래를 국세청에 등록하도록 함
-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신고시기를 달리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고 예규 공표 이후 거래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의무 신고기한은 없음
 - 다만, 투자상품의 조세혜택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하면 금융상품이 거래되기 이전이나 상품 판매 초기가 될 것임

8. 비교 및 결론

- 이상에서 검토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표 IV-1>과 같음

〈표 IV-1〉 주요국의 제도비교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투자상품 예규제도
	미국	영국	호주
도입시기	1984년	2004년	1998년
금융자료의 초기확보가능성	있음	있음	있음
신고(발행)건수	n.a.	3,202건(연 380건)	1,350건(연 90건)
신고의무의 강제성	○	○	×
신고의무자 ¹⁾	금융기관, 납세자	금융기관(특정한 경우만 납세자)	금융기관
신고대상거래	6가지 거래	7가지 거래	투자상품
신고 내용	신고자, 신고거래의 대상 법규정 및 신고대상거래, 계약의 요약내용, 조세상 혜택의 내용	신고자, 신고거래의 대상 법규정 및 신고대상거래, 계약의 요약내용, 조세상 혜택의 내용	조세회피혐의거래 신고 내용 + 특정요소 포함여 부, 자금조달 여부, 고려 되어야 하는 실무적 이 슈 등, 관련자들의 재무 상 지위의 변화 등
가산세(벌과금) 대상	1. 조장자 등의 혐의거래 등록 2. 등록의무자가 고객에 게 등록번호 제공 3. 납세자의 혐의거래 신 고(등록번호/거래내 용) 4. 보관자료 제출의무	1. 조장자 등의 혐의거래 등록 2. 등록의무자가 고객에 게 자문 제공 3. 납세자의 소득세 신고 시 등록번호 신고	잘못된 예규 적용
신고 시기	1. 조장자는 판매를 하기 전 2. 실질적 자문을 한 자 는 자문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거래의 실행이 가능하게 된 날	필요에 따라 신청하고 예규 공포 이후 거래에 대해 효력 발생하므로 의무 신고기한은 없음
기타 효과	1. 금융기관이 조세회피 상품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 2.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 효과	1. 금융기관이 조세회피 상품 개발을 억제하는 효과 2.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 효과	1. 조세혜택에 대한 결과 를 보장받으므로 불확 실성이 제거되는 효과 2.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투자수요 감소 효과

주: 1)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제도의 신고의무자는 예규를 신청할 수 있는 자임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 모두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상품판매 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금융상품 과세자료의 조기 확보’라는 목표는 달성가능한 제도라고 판단됨
 - 모든 경우에 신고시기를 상품판매 전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상품판매 초기에는 관련 자료를 국세청이 확보할 수 있음
 -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혐의거래를 등록하거나 금융상품 예규를 받도록 하는 절차 외에 납세자가 소득을 신고할 때 혐의거래나 관련 예규를 제시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에 비하여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납세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절세의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해당 제도의 수용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는 부정적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긍정적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됨

- 금융상품에만 한정하는 경우 투자상품 예규제도의 대상이 조세회피 혐의거래의 대상에 비하여 좀 더 다양한 유형이 포함될 수 있는 반면, 신청이 강제되지 않아서 신청건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두 제도의 정보 확보량을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움
 - 신청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경우에는 법에서 열거한 유형 전체가 신고대상이 되는 데 비하여 투자상품 예규제도는 고객이 신청한 상품에 한정하여 정보입수가 가능함
 -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포함 가능성과 관련하여 투자상품 예규제도에서는 ‘상품’에 해당하면 제한이 없이 예규 신청이 가능하므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유형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에서 제외될 수 있음⁵⁹⁾

59) 안종석 외(2007), p.182

- 본 연구는 금융상품 정보의 사전적인 확보 측면에서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와 투자상품 예규제도를 살펴보았는데, 제도의 수용 가능성 및 확보 가능한 정보의 양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제도의 선택은 제도설계의 목적에 따라 달라져야 함

〈표 IV-2〉 금융상품 정보의 조기확보 가능제도 비교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투자상품 예규제도
방식	부정적 거래를 억제	긍정적 거래를 유도
제도 수용가능성	부정적	긍정적
포함 유형의 다양성	좁음	넓음
신고(신청)건수가 많을 가능성	높음	낮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된다면 해당 금융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하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일정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각국이 제도의 형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을 실무에서 다루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고려하여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절세나 조세회피에 대한 조기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등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수적일 것임
 - 미국은 금융기관 외에도 실무적인 조언을 한 자에게도 신고대상거래의 등록의무를 부여하여 신고의무자를 확대하였음
- 우리나라가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수집을 위하여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하여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 후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야 가산세 등 강화조치를 취하였음
 - 또한 제도별, 국가별로 조장자와 고객인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의무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는 제도의 도입설계 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 도입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영국의 경우에도 일정 분야에 한정하여 제도를 도입한 후 시차를 두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신고대상이 되는 거래를 선정함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은 신고대상거래를 유형별로 정하고 해당 유형에서 제외하는 거래를 규정하여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 있음
 - 어떤 거래 유형을 신고대상에서 제외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의 가산세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이 유사하게 해당 거래의 등록의무가 있는 조장자에게 보다 큰 가산세를 부담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은 영국과 달리 자료보관 의무와 관련된 가산세 유형이 있음

- 투자상품 예규제도의 결과를 보면 예규의 효력 및 시행시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해당 예규가 신청된 바와 같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에 가산세를 두어 공적예규가 예규 신청 시와 달리 실행되는 것에 제재를 하고 있음

참고문헌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호주편』, 한국조세연구원, 2012. 5.

안종석 · 안경봉 · 오윤,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12

HMRC, “Guidance-Disclosure of tax avoidance schemes,” 2012.2

CCH, 『Australian Master Tax Guild』, 2012

CCH, 『British Master Tax Guild』, 2011-12

미국 국세청, <http://www.irs.gov/>

영국 국세청, <http://www.hmrc.gov.uk/>

호주 국세청, <http://www.ato.gov.au/>

[부록 1]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의 결과 사례

- 본 보고서는 2012년의 투자상품 예규(Product Ruling)의 사례 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해석의 내용 및 상품 예규의 제시방식 등을 살펴보고자 함
 - 'Commonwealth Bank Vantage+ Series 2'에 대한 소득세법상 조세결과를 제시한 PR 2012/5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
 - CBV Vantage+ Series 2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① 다른 투자조건과 레버리지를 가진 두 가지 전략 중에서 하나를 선택함
 - ② 투자자의 최초 투자액의 몇 배에 달하는 투자노출(exposure)을 통하여 높은 수익의 잠재력이 있음
 - ③ 수익은 S&P/ASX200지수를 통하여 호주의 200개 대기업의 실적과 연결되어 있음
 - ④ 최소투자금액은 \$25,000임⁶⁰⁾
 - CBV Vantage+ Series 2에 투자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음
 - ① 수익이 불확실함
 - ② 기초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 수익과 손실이 배가될 가능성이 있지만, 손실은 선급금의 범위로 한정됨
 - ③ 원금보장이 되는 것은 아님
 - ④ S&P/ASX200지수가 투자기간 동안 상승한다고 해도 손익분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은 있는데, 예를 들어 선급금이 2년투자 명목금액의 14%이고 지수가 만기에 14% 오르면(연단위로는 7%) 고객은 손익분기 수준임. S&P/ASX200지수가 조건을 넘어서 상승하지 못하면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⑤ 투자마감일(closing date)까지는 선급금을 알 수 없음
 - ⑥ 투자에 대하여 조기종료를 하는 경우에 조기종료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CBV Vantage+ Series 2와 관련된 주요 날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60) <http://www.commbank.com.au/corporate/financial-markets/structured-investments/vantage-plus/>

- 투자계약 시작일(offer opens)은 2012년 2월 13일
- 투자계약 종결일(offer closes)은 2012년 3월 30일
- 투자시작일(start date)은 2012년 4월 5일
- 만기일(maturity date)은 전략 1은 2014년 4월 7일이고, 전략 2는 2017년 4월 5일

- 투자상품과 관련된 상품 예규 중 하나인 PR 2012/5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룸
 - 제목은 ‘Income tax: tax consequences of investing in Commonwealth Bank Vantage + Series 2(Deferred Purchase Agreements)’임
 - 호주 시중은행 중의 하나인 Commonwealth Bank의 Vantage Series 2에 투자하는 경우에 과세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이 투자상품 예규는 이연구매계약(Deferred Purchase Agreement, DPA)과 관련이 있음

1) DPA와 관련된 규정

- 이 부분은 PR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PR 2012/5의 이해를 위하여 포함함
- Division 16E에 의하면 정기적인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원금 보장을 하는 형태의 채권에 대한 수익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발생되고, 소득세는 수익발생 시 지불되어야 함
 - 정기적인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의 채권에 대해서는 1936년 소득 평가에 대한 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Part III의 Division 16E를 적용하게 됨
 - 사채기간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 이러한 세법규정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음
 - Division 16E는 해당 채권을 발행할 때는 최종적인 수익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움

- 최종적인 수익이 확정되는 만기에 복잡한 세무조정을 해야 함
 - Division 16E에 의하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투자자의 한계소득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보유했던 투자자산에 대해서 50%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CGT) 면제라는 과세상의 혜택을 감소시킴
 - 이러한 불리한 점으로 인하여 호주에서는 정기적인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채권은 거의 발행되지 않고 있음
- DPA는 1936년 소득 평가에 대한 세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Part III의 Division 16E를 적용하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만기에 한번만 지불하는 형태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하는 형태임
- 국세청 해석(Taxation Determination) TD 2008/21에 의하면 DPA에 대한 투자이익이 자동적으로 ‘거래 증권(traditional security)’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 또한 국세청 해석(Taxation Determination) TD 2008/22에서 자본이득세는 인도자산이 투자자에게 인도되는 DPA의 만기일에 발생한다고 함
 - DTA는 Division 16E의 복잡한 발생주의 계산을 피할 수 있고, 12개월 이상의 사채기간을 가지는 상품으로 만기에 수익이 실현되는 경우에는 세무목적상 자본이득으로 보아 CGT에 대해 50%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DPA는 투자자가 이연기준일(deferred basis)에 인도되는 인도자산(delivered asset)을 취득하기 위해 DPA 당시의 구매가격을 지불하는 발행자와 투자자 간의 계약임
- 이연기준일은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음
 - DPA는 만기일이나 발행가격을 사전에 정하며, DPA의 가치는 미리 정한 기초포트폴리오의 실적과 관련이 되어 있음
 - DPA는 투자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익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음
 - DPA의 만기일에 이전되는 이전자산은 DPA의 만기가치와 거의 동일함
 - 투자자는 실제로 인도자산을 인수하거나 DPA의 발행자가 해당 인도자산을 투자자의 계산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짐

- DPA거래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투자자가 DPA의 구매가격으로 \$10,000을 최초에 지급함
 - 투자자에게 인도될 때 인도자산의 시장가치가 \$15,000이 됨
 - 인도되는 시점에 현금수수는 없었지만, 투자자는 \$5,000의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자본이득세가 과세됨
 - DPA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투자자는 자본이득 50%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됨
 - 이후 인도자산은 2년 후 \$22,000에 매각됨
 - 투자자는 인도자산의 매각 시에 \$7,000의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자본이득세가 과세됨

2) 이용자 및 시행일

- 이 PR은 투자자가 이용할 때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함
 - 투자자는 투자계약 시작일(opening date) 이후 및 투자계약 종결일(closing date) 이전에 해당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제의(offer)를 해야 함
 - 그 제의가 받아들여져서 판매조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2012년 4월 5일부터 2014년 4월 5일 사이에 시작되어야 함
 -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시된 만기까지 보유하고, 보유에 따른 자본이득을 발생 시켜야 함

- 이 PR은 거래에 대한 투자자 중 일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음의 투자자는 이용할 수 없음
 - 만기 전에 거래를 종결하거나 자본이득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
 - 투자계약 시작일에 앞서서 이 거래를 시작한 경우
 - Commonwealth Bank Vantage + Series2 상품공시서(product disclosure statement) 외에 다른 제의로 참여한 경우나 중간자인 독립적인 조연자, 판매중개자 등과 공시되지 않은 약정서로 계약한 경우
 - 투자자가 인도자산과 DPA를 보유하고 투자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인도자산과

DPA의 거래를 세무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을 거래한 경우

- 이 PR은 2012년 3월 21일 공표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세법개정에 따른 영향을 고려되어야 함
 - 상품별 예규는 발행될 당시에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맞춘 것이므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면 이 상품별 예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이러한 개정은 이 상품 예규보다는 우선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 변경범위에서는 효력이 없어질 수 있음
 - 해당 거래에 참여한 납세자는 세법개정이 된 경우 세법개정이 이 상품별 예규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받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일반소비세(GST)를 포함하여 모든 비용과 지출은 상품별 예규제도를 참고하고, 납세자는 이 지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의 자격이 있음
 - 매입세액공제를 위해서는 GST 등록을 해야 하고,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보유해야 하며, 투자자에 의해 발생한 지출이 공제가능한 인수로서 적격한 것이어야 함

3) Ruling

- 관련 법규 :
 - DPA 관련규정
 - DPA하에서 투자자의 법적 강제권은 전적으로 subsection 108-5(1) 규정에 의한 자본이득세(CGT) 대상자산임⁶¹⁾
 - 이전자산을 투자자에게 이전하거나 투자자의 계산으로 은행이나 대리인에게 이전할 때, DPA에 대한 계약상 권리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권은 이러한 권리가 만족될 때까지 혹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됨

61) section 108-5의 자본이득세 자산규정에 따르면 자본이득세 자산은 재산의 한 종류이거나 재산이 아니더라도 법적이거나 이와 동등한 권리며, DPA에서 투자자의 권리는 자본이득세 자산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리임

- 자본이득세 자산은 판매약정서 3.4에 언급된 것처럼 투자자에게 물리적으로 이전되거나 판매약정서 3.5에 언급된 것처럼 은행이 판매서비스에 따라 투자자의 계산으로 보유하게 된 자산임
- 자본이득세의 사건인 C2는 이 시기에 section 104-25 하에서 발생함⁶²⁾
- 취득원가보다 최종적인 투자자 소유권으로부터 얻게 되는 자본수익이 더 크다면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할인된 취득원가보다 투자자 소유권으로부터 얻게 되는 자본수익이 크지 않다면 자본손실이 발생함
- 자본수익은 이전자산을 인도일에 받은 이전자산의 시장가치나 판매약정서 3.7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받은 현금가액임
- 판매서비스계약이 있는 경우 투자자의 자본수익은 이전일에 받은 이전자산의 시장가치임⁶³⁾
- 투자자가 실물자산을 이전받기로 선택하거나 간주되는 경우에, section 116-20의 자본이득은 약정일(settlement date)에 받게 되는 이전자산의 시장가치와 동일하게 될 것임
- 투자자가 판매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에, section 116-20에 자본이득은 거래일(trade date)의 이전자산의 시장가치와 동일함
- DPA하에서 투자자의 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원가기준이나 감소된 원가기준은 이행금액(application amount)을 포함함
 - subsections 110-25(2)와 110-55(2)의 내용임
- DPA하의 투자자 권리를 충족시킨 결과로서 투자자에 의해 실현된 자본이득은 투자자가 개인, 국민연금관련 법인, 신탁인 경우로서 12개월 이상을 DPA를 보유한 경우에는 section 115-5의 할인된 자본이득으로 취급됨⁶⁴⁾
 - DPA하에서 투자자의 계약상 권리를 포함하는 자본이득세 자산은 투자자가 DPA를 시작했던 첫날에 취득해서 보유했던 것임
 - 12개월을 산정할 때 처분이나 취득의 날은 제외함

62) section 104-25에 의한 자본이득세 사건 C2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TD 2008/22에 규정하고 있음

63) section 116-20

64) section 115-5는 할인된 자본이득에 대한 규정임

- subsections 109-5(1)의 내용임⁶⁵⁾
- DPA는 1936년 소득 평가에 대한 세법의 subsection 26BB(1)에서 정의된 거래 증권(traditional security)이 아님
 - DPA가 ITAA 1936의 section 26BB와 70B의 목적상 거래증권인지에 대해서는 국세청 해석(taxation determination) TD 2008/21에서 그 내용을 다루었음
 - 거래증권은 ITAA 1936의 subsection 26BB(1)에서 정의하였는데, 이는 ITAA 1936의 Division 159GP(1)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 ‘증권’의 의미는 ① 주식, 사채, 채무증서, 자격증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증서, ②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 ③ 담보 혹은 무담보 차입금, ④ 앞서 서술한 것 외에 어떤 사람이 보증 여부나 서면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계약임
 - DPA는 ITAA 1936의 subsection 159GP(1)에서 ①, ②, ③외에 ④의 정의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권이 되지 않는 못하고 이에 따라 거래 증권(traditional security)이 아님
- DPA는 1936년 소득 평가에 대한 세법의 subsection 159GP(1)에서 정의된 적격 증권(qualifying security)이 아님
 - 어떤 계약이 적격증권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은 subsection 159GP(1)에서 정의하는 증권이 되어야 함
 - 앞서 거래증권이 되지 못했던 이유와 마찬가지로 DPA는 증권이 아니므로 적격증권도 될 수 없음
- Division 230은 section 230-455에 의한 이러한 거래구조가 적용되는 Division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해당 투자자가 보유한 DPA로부터 발생하는 어떤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음
 - Division 230 ‘금융상품(financial arrangement)’에서의 이득과 손실에 대한 세무상 처리를 규정하고 있음
 - 적격증권이 아니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ITAA 1997의 Division 230의 section

65) section 109-5는 자본이득세 자산의 취득에 대한 규정으로 DPA하의 투자자에 대한 계약상의 권리를 포함하는 자본이득세 자산은 투자자가 DPA를 시작할 때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임

230-455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등이 보유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ITAA 1997의 Division 230의 section 230-455를 적용하지 않음

- section 230-455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실체는 개인, 1억달러 미만의 자산을 가지고 외국법에 의해 관리투자거래를 하는 법인이나 연금법인, 2천만달러 미만의 총수익을 가진 금융관련 법인, 1억달러 미만의 총수익, 1억달러 미만의 금융자산 및 3억달러 미만의 자산을 가진 그 외의 법인

○ 이전자산 관련규정

- 투자자의 계산으로 판매서비스를 위하여 투자자나 은행에게 직접적으로 받은 이전자산은 subsection 108-5(1)에 의해서 자본이득세가 적용되는 자산임
 - 이후에 이전자산에 대한 처분은 section 104-10에 의한 자본이득세 사건 A1을 발생시킴
 - 투자자는 자본이득세 사건이 있을 때 자본손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취득원가보다 투자자의 처분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취득원가보다 투자자의 처분가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자본손실이 발생함
- section 116-20하에 투자자의 자본이득은 그들이 받거나 받을 금액임
 - 판매서비스의 경우에는 이 금액은 판매이득이 될 것임
- 투자자의 이전자산에 대해 원가기준이나 할인된 원가기준은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날의 시장가치나 투자자의 계산으로 은행이 보유하게 되는 날의 시장가치에 투자자가 이전자산의 취득을 위해 발생시킨 추가적인 원가를 더한 금액임
 - 판매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 취득원가는 중개수수료가 포함됨
 - section 110-25, 110-55, 112-20이 포함됨
- 물리적 이전자산의 처분으로 투자자에게 실현된 자본이득은 투자자가 개인, 국민연금관련 법인, 신탁인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 section 115-5에 의한 할인된 자본이득으로 취급될 것임
 - 이전자산은 이전되는 시기에 subsection 109-5(1)에 의해서 투자자가 취득했던 것이어야 함
 - 판매서비스로 취득한 이전자산의 저분으로부터 투자자에 의해 실현된 자본이득은 section 115-5에 의한 할인된 자본이득으로 취급되지 않음

○ 조세회피방지 규정(anti-avoidance provisions)

- 이 상품 예규에서 기술되어 시행되는 거래구조는 1936년 소득 평가에 대한 세법 Part IVA 규정인 조세회피규정은 DPA를 취득한 투자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 거래구조 :

○ 이 PR을 적용하는 거래구조는 다음의 문서에서 제시된 것임

- PR을 위한 신청을 위하여 2012년 1월 31일에 받은 정보와 문서
- 2012년 1월 31일에 받은 판매조건과 판매기간을 포함한 전자정보(portable document software, PDS)
- 2012년 1월 31일에 받은 Commonwealth Bank Vantage + Series 2로 지정된 증서

○ 주식으로 특정 정보는 비밀을 지켜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제공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제공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 또한 해당 계약은 호주 증권투자협회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함

○ Commonwealth Bank Vantage + Series 2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호주 Commonwealth Bank에게 투자자가 행사금액(application amount)을 지급하고, DPA를 위한 투자자의 행사를 인정하는 Commonwealth Bank Vantage + Series 2 상품의 공시문서에는 판매기간, 그 기간 안에 행사 적용 양식과 기간에 대한 스케줄, 투자자와 호주 Commonwealth Bank 간에 이연구매계약을 위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음
- 투자자에 의해 지불되는 행사금액은 최초 자문료(initial adviser fee)와 선급금(upfront amount)을 구성함
 - 최초 자문료는 투자자와 조력자 간에 동의한 금액으로, 호주 Commonwealth Bank가 시작일 후 단기간 내에 투자자의 행사금액으로 부터 조력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임
- 투자자에 의해 전략에 따라 선급금으로 투자된 금액은 다음의 기초포트폴리오의 실적에 대부분 노출되어서 그 위험이 좌우됨

- 전략 1은 앞선 시작일에 은행이 결정한 명목가액의 14%에서 16% 사이에서 결정함
- 전략 2는 앞선 시작일에 은행이 결정한 명목가액의 22%에서 24% 사이에서 결정함
- 명목가액은 투자자가 위험에 노출되는 실질적인 크기를 나타냄
- 투자자는 전략당 최소 2만 5천달러의 명목가치를 투자해야 하고, 천달러 단위로 증액투자를 할 수 있음
- 은행이 투자자의 제의를 수용하는 것은 은행의 무조건적이고 취소할 수 없는 행위로 이뤄짐
 - 은행은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판매조건에 따라 투자자가 요구하는 인도 및 대리인으로서 대리인이 보유한 신탁으로서 명목증권의 일부에 대한 수익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만기일에 투자자의 이전계약에는 많은 이전자산들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이전 자산들은 만기가치와 동일하게 될 것임
- 전략 1에 대한 이 해석의 문단 21(h)에서 정한 한도에 따라, 만기가치는 투자자가 그들의 DPA에 적용하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의 실적에 따름
 - 두 개의 투자전략 중에서 하나가 적용가능하고 전략 1과 전략 2는 DPA기간에 걸쳐서 참고자산(reference asset)의 실적에 따름
 - 각 전략의 최소명목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전체 투자에서 전략을 다른 비율로 적용할 수 있음
- 투자자의 만기가치는 전략1의 측면에서 선결정된 업적비율한도(capped level)를 초과하지 않음
 - 전략 1의 측면에서 선결정된 업적비율한도(capped level)는 S&P/ASX200 지수의 초기참고 수준의 140%이고, 이는 명목가치의 40%이므로 최대만기가치와 동일함
 - 전략 2는 한도가 없음
- 투자자의 만기가치는 명목가치의 특정 수준으로 보호되지는 못함
 - 투자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은 선금금으로 제한됨

- DPA는 해당기간 동안에 분배금, 쿠폰이나 다른 금액으로 지급되지 않음
- 투자자는 만기일에 앞서서 은행에 이행통지를 전달할 수 있는데, 이는 전략 1과 전략 2에 대하여 각각 시작일 이후 2년과 5년의 시점임
 - 투자자는 실물로 인도받을 것인지 판매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함
 - 투자자가 완전하게 타당하게 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실물이전을 채택한 것으로 간주됨(판매약정서 3.1과 3.3)
- 투자자 선택이나 투자자의 실물이전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 은행은 투자자에게 약정일(settlement date)에 이전자산들을 이전할 것에 동의함(판매약정서 3.4)
- 투자자가 판매서비스를 통한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CBA는 다음에 동의함
 - 거래일에 투자자의 계산으로 이전자산을 보유함
 - 거래일에 투자자의 계산으로 이전자산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효과를 조정함
 - 약정일에 투자자에게 판매의 결과를 지급하고, 만기가치의 0.55%에 달하는 중개수수료(brokerage fee)를 투자자 이전자산의 판매원가에 반영하여 차감함(판매약정서 3.5)
- 은행은 투자자에게 이전할 때의 이전자산의 시장가치나 투자자의 계산으로 이전자산을 은행이 보유하기 시작할 때의 시장가치에 대해 투자자에게 조언을 할 것임
- 이전자산의 실질적인 이전이나 판매결과에 대한 지급을 투자자에게 하면서, 판매조건하에 투자자에게 해야 하는 은행의 의무는 대리인의 행위에 요건과 일치하도록 투자자를 충족시키고 계약을 종료하는 것임(판매약정서 3.6)
- DPA는 호주 증권거래소의 시세가 나오지는 않지만, 투자자는 판매약정서 13.11에 특정약정과 관련하여 DPA 전체를 이전할 수 있음
 - 이 상품 예규는 이와 같은 이전에 따른 과세결과를 고려하지는 않음
- 판매약정서 8.2에 따르면, 투자자는 서면통지에 의해서 CBA에 조기종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즉, 만기일 이전에 이연자산의 이연구매를 하는 경우임
 - 은행은 재량적으로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음

- 투자자는 은행이 조기종료를 수락한 경우 500달러까지의 조기종료비용을 지불할 수 있고 이는 조기종료일까지의 투자자 DPA의 원가에 반영됨
- 이 상품 예규는 이와 같은 조기종료의 과세결과를 고려하지는 않음
- 은행이 재량으로 투자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한 조기종료를 선택할 수도 있음
- 이는 판매약정서 8.1의 DPA기간 동안 특정시기에 DPA의 조기종료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임
- 이 상품 예규는 이와 같은 조기종료의 과세결과를 고려하지는 않음
- 이 상품 예규는 다음의 가정을 근거로 만들어졌음
 - 투자자 모두가 과세목적상 호주의 거주자로, 개인, 법인, 신탁, 국민연금펀드를 포함함
 - 투자자는 금융상품이나 증권의 거래업자가 아니고, 과세목적상 이전자산과 DPA의 거래를 사업으로 하는 거래자나 보유자로 취급되지 않음
 - 투자자가 이 거래구조를 하게 된 목적은 DPA 투자를 통한 자본이득을 얻기 위한 것임
 - 이 거래구조는 상품 예규 문단 18에서 언급된 거래구조 관련 문서와 상품 예규의 거래구조 관련 부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실행될 것임
 - 투자자와 은행 간의 모든 거래는 정상가격으로 이루어질 것임

[부록 2] 호주의 금융상품별 고객구분 기준

〈general insurance products : FSRA 제761G조(5)〉

금융상품이 general insurance product이거나 또는 어느 자에 제공된 금융서비스가 general insurance product에 관련되어 있다면,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는 다음의 경우 retail client인 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봄

- (a) (i) 당해 자가 개인이거나 또는 (ii) 보험상품이 소규모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경우,
- (b) general insurance product가 (i) motor vehicle insurance product, 또는 (ii) home building insurance product, 또는 (iii) home contents insurance product, 또는 (iv) sickness and accident insurance product, 또는 (v) consumer credit insurance product, 또는 (vi) travel insurance product, 또는 (vii) personal and domestic property insurance product, 또는 (viii) 이 subparagraph의 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규정에 의해 정해진 general insurance product인 경우

그 이외의 다른 경우에는, general insurance product인 금융상품을 어느 자에게 제공하거나 general insurance product에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어느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retail client인 자에게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superannuation products 및 RSA products : FSRA 제761G조(6)〉

- (a) 어느 자에 제공된 금융상품이 superannuation product 혹은 RSA product이라면, 당해 상품은 retail client인 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며,
- (b) (C)(i) 또는 (ii)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자에게 제공된 금융서비스(금융상품의 제공이 아닌)가 superannuation product 혹은 RSA product에 관련되어 있다면, 당해 서비스는 retail client인 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보며,
- (c) 다음의 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서비스(금융상품의 제공이 아닌)가 superannuation product 혹은 RSA product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은 retail client인 자에게 금융서

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함

- (i) 최소 순자산이 천만호주달러인 superannuation fund, approved deposit fund, pooled superannuation trust 혹은 public sector superannuation scheme의 수탁인 또는
- (ii) RSA(Retirement Savings Accounts) provider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 : FSRA 제761G조(5)〉

금융상품이 general insurance product, superannuation product 또는 RSA product가 아니거나 또는 어느 자에 제공된 금융서비스가 이러한 상품들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적용되지 않는 한 retail client인 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봄

- (a) 금융상품의 제공가격 또는 금융서비스가 관련된 금융상품의 가치가 당해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것으로 관련규정에서 정해진 금액(50만호주달러)에 해당하거나 초과하는 경우(product-value test) 또는
- (b)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가 소규모 사업이 아닌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되도록 제공된 경우 또는
- (c)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가 사업과 관련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지 않고, 그리고 상품 또는 서비스를 취득하는 자가 적격회계사(qualified accountant)에 의해 6개월 이내에 발부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인증서 사본을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이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제출한 경우(individual wealth test)
 - (i) 당해 자가 최소한 관련규정에서 정해진 금액(250만호주달러)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 (ii) 당해 자가 최소한 관련규정에서 정해진 금액(25만호주달러)의 연간 총수입(gross income)이 최근 2년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 (d) 당해 자가 전문적 투자자(professional investor)인 경우(금융서비스전문가, 등록회사, 은행, 공제조합 등이 포함됨)

[부록 3] 호주의 투자상품 예규의 사전확인(Product Ruling) Check List

PART 1: GENERAL APPLICATION DETAILSSection A: **Applicant/agent information****1 Applicant details**

Name

Contact person

Address

Suburb/town

State/territory

Postcode

Telephone

Facsimile

Email address

ABN (or other relevant ID number)

TFN (not mandatory)

2 Agent/tax professional details

Name

Contact person

Agent ID

Address

Suburb/town

State/territory

Postcode

Telephone

Facsimile

Email address

Other relevant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details of who this application should be discussed with)

3 Does the agent/tax professional adviser hold written consent to make this application on behalf of the applicant?

No Yes Written consent must be supplied on request.

4 Provide a signed declaration by the applicant (or the applicant's agent) that the material contained in the application is true and correct.

If the declaration is made by an officer of a company, declare the officer's position in the company.

Section B: About the ruling you seek

5 List the income years for which you seek a ruling.

i A financial product ruling may apply retrospectively only if it clearly states so. But it will be limited to rulings that issue in the same financial year as an entity's entrance into the scheme.

6 List your questions.

7 List the tax laws you seek ruling on.

8 Has this application (or any similar application) been lodged by, or on behalf of, the applicant (or their associate) at any other time or at any other office of the ATO?

No Yes Written consent must be supplied on request.

i The product ruling will be published openly. It will disclose the name of the applicant and all other parties in the scheme. Provide separate written consent from each party in the scheme set out in the product ruling to be named in the ruling (for example, financier, landowner, material subcontractors, custodian).
Where an entity not associated with the applicant declines to be named in the ruling, provide a statement explaining the refusal.
You must name the applicant, and any associated entities, and provide their written consent.
Taxation advisers and agents will not be named in the ruling.

Section C: Existing action/rulings

9 Is the scheme (or any similar scheme) on which you seek a ruling the subject of objection, appeal, review or audit?

No

Yes

If the scheme is subject to an objection, appeal or audit, then the Commissioner will generally not be able to provide a product ruling to an applicant. This is because the review or audit will determine the ATO view of the scheme and the product ruling becomes unnecessary.

10 Is the scheme on which you seek a ruling subject to a double taxation agreement?

No

Yes

Which one?

11 List existing taxation rulings or product rulings relating to the scheme on which you seek a ruling.

12 List any private rulings or administrative binding advice you are aware of that relate to the scheme (or any similar scheme) on which you seek a ruling.

PART 2: DETAILS OF THE SCHEME

Section D: The scheme

13 Provide a brief (1–2 page) overview of the scheme including, where applicable:

- details of the end-to-end process in sequential order of the scheme arrangement
- intended life of the scheme and minimum period of a participant's involvement in the scheme
- entities involved and their relationships (contractual or otherwise).

Insert reference

14 Provide a diagram(s) supporting the overview of the scheme. This diagram should indicate:

- details of the end-to-end process in sequential order of the scheme arrangement
- intended term of the scheme and minimum period of a participant's involvement in the scheme
- entities involved and their relationships (contractual or otherwise).

Insert reference

15 Does the scheme incorporate any of the following or like features:

- | | |
|---|--|
| ■ a capital protected loan facility | ■ property investments |
| ■ a reset feature (a feature designed to reinvest or 'reset' the investment at regular intervals or when a trigger event happens) | ■ warrants |
| ■ a trading feature (a feature designed to enable the participant to sell or trade in the security) | ■ contract for difference |
| ■ a rollover feature (at the conclusion of the investment, a feature designed to enable the participant to reinvest for another term on substantially similar conditions) | ■ margin loan facilities |
| ■ a security trustee | ■ prepayment facilities |
| ■ derivatives, including a call or put option | ■ notes, bills, bonds and debentures |
| ■ linked or split loan features (loans with different accounts or sub-accounts established for both investment and private purposes) | ■ mortgage linked investments or loan facilities |
| | ■ a swap |
| | ■ a collar |
| | ■ an executory contract |
| | ■ a hybrid trust in its structure |
| | ■ deferred purchase agreement |
| | ■ international transactions? |

No What is the nature of the product offered under the scheme?

Yes Describe each feature and how and when it is intended to operate within the scheme.

16 Provide a copy of all agreements relating to the scheme. For example:

- constitutions or trust deeds
- loan agreements
- subcontracting agreements
- agreements relating to the management or acquisition of assets
- agreements governing the distribution of profits arising from the scheme.

Insert reference

17 Provide marketing materials and any promotional material issued, or to be issued, to participants, financial planners or advisers or commission agents.

Insert reference

18 Provide written information to be provided to participants regarding their investment.

Insert reference

Section E: Corporations law

! We may refuse to issue a product ruling where statutory or other government requirements – for example, offer document,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AFS) licence, approvals – have not been met, have expired or have been withdrawn (refer to paragraphs 87(c) and (f) of [PR 2007/71](#))

19 Provide a copy of the offer document and application form to invest in draft or final form.

Advise whether the offer document will be or has been lodged and/or approved by the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ASIC).

Insert reference

20 Have all requirements under the *Corporation Act 2001* (Corporations Act) been met?

In particular:

a is the scheme a managed investment scheme within the terms of the Corporation Act?

No Yes

b is it required to be a registered scheme?

No Yes Provide the Australian Registered Scheme Number (ARSN) for the scheme. If the scheme is not yet registered, when do you intend to register it?

c has the relevant 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AFS) licence been obtained?

No Yes Provide a copy of the AFS licence. Where a final version of the AFS licence has not yet issued, provide a copy of the current draft AFS licence and details of when you expect us to issue the final version.

Day	Month	Year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1 Provide details of the scheme property for Corporations Act purposes. Where the scheme is a managed investment scheme, does the scheme property include any of the participants' leasehold or licence rights?

22 What interests in specific property (whether real, personal, intellectual or intangible) will participants receive? What are their rights to deal with the property?

Section F: Superannuation fund regulations

23 Will the financial product be marketed to complying superannuation funds?

No Yes

24 In the event that complying superannuation funds a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scheme, have you sought or do you intend to seek advice in respect of the tax implications for a complying superannuation fund under the *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 1993*?

No Yes

Section G: Fees

25 List all fees payable over the period of the scheme. For each fee you identify, indicate who is required to pay the fee and when.

26 List all other expenses not identified at question 25 payable over the period of the scheme and indicate who is required to pay the expense and when.

27 What options are available for participants to fund the fees and expenses listed above?

28 What are the consequences for a participant in the event of default in payment of fees and expenses by that participant?

29 Is the participant able to defer any payments for fees or expenses to a later date?

No Yes

30 Describe the goods and/or services that are supplied or provided for which each fee is consideration.

Section H: Investing amount
31 Provide details of the:

- a **minimum subscription**

- b **number of potential participants**

- c **cash expected to be received from participants in the first income year.**

32 Are participants entitled to recoup, or have any part of their subscription monies refunded or returned, after entering the scheme?

No Yes

33 Answer these questions in relation to income earned by the applicant and associated entities:

- a **will the applicant and associated financiers include, in assessable income, amounts equivalent to expenses incurred and deductions claimed by participants?**

Explain any differences.

- b **where there are transactions between the applicant and associated entities, or between associated entities, will assessable income and deductions be matched across entities?**

Explain any differences.

- c **will income earned by the applicant and associated entities be included in assessable income in the same year as deductions are claimed by participants or other associated entities in relation to those amounts of income?**

No Yes Identify the amount for each year and give reasons for that timing.

- d **what type and amount of deductions will be claimed in relation to assessable income of the applicant and associated entities?**

- e **will the applicant and associated entities enter into any arrangements that are intended to, or have the effect of, sheltering income from tax?**

No Yes Provide details

- f **identify any entities within the scheme that are acting in the capacity of trustee and the relevant trust structure. Include the names of beneficiaries.**

34 Provide cash flow forecasts and budgeted profit and loss statements for the applicant over the life of the scheme.

Insert reference

35 Provide a pre- and post-tax cash flow projection for a single participant.

You should calculate this using the following assumptions and parameters:

- an investor is on the highest marginal tax rate
- that investor pays the minimum subscription amount
- returns on investment to be calculated on the basis of historical performance, omitting the likelihood of unusual or catastrophic events
- the investor holds the investment for the life of the product.

If it is reasonably likely to occur, you should also assume the investor will hold the investment for a period of time exceeding the product.

The cash flow projection should identify clearly whether the participant in the scheme is likely to generate a pre- and post-tax profit.



This cash flow projection must be supplied to us. If you do not supply it we will treat the application as invalid.

Insert reference

Section I: Finance

36 Will the applicant or any associated entity:

a be involved in providing finance to participants ('internal finance')

No Yes

b introduce participants to external sources of finance from parties unrelated to the scheme ('preferred financiers')?

No Yes

➤ If you answered 'No' to both question 36a and 36b go to section J.

ℹ The ATO's [Financing Principles](http://www.ato.gov.au) for all managed investment schemes are available at www.ato.gov.au

37 Provide a copy of the loan agreement and any other finance documentation.

Insert reference

38 For internal finance schemes, provide evidence of the internal financier's ability to fund loans to participants – for example, balance sheet, group accounts, letter of credit.

Insert reference

39 For preferred financiers, provide evidence of an offer to provide finance for participants.

Insert reference

40 Will participants' loans be non-recourse, limited recourse or deferred recourse?

The term 'non-recourse' describes a loan arrangement where a financier has no recourse beyond a specified security of the borrower – for example, where security is linked to the income proceeds from the scheme.

No Yes

41 Provide indicative loan terms.

42 Are there circumstances in which a participant will not be required to repay the borrowed monies to the financier in the period specified in the loan agreement?

No Yes Provide details

43 Will the financier undertake normal commercial recovery activity, including legal proceedings where necessary, to recover borrowed monies from defaulting participants?

No Yes Provide details

44 For what purposes can the loan funds be used?

45 Can participants make a further draw down on the lo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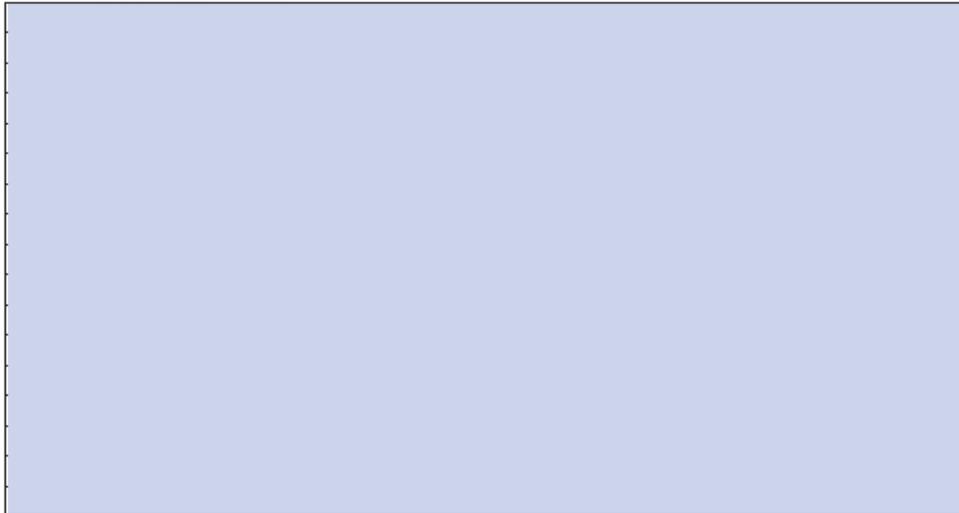
No Yes For what purposes can the further amount drawn down be used?

Section J: The case

- 46 List any propositions of law relevant to the questions and issues raised in this application, giving:**
- a legal reasons and authoritative support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relevant to the questions and issues**
 - b possible arguments contrary to the interpretation adopted, and legal reasons and authoritative support**
 - c all other material or relevant matters or sources of information the Commissioner should be made aware of to ensure access to all the necessary facts and law**
 - d other legislative provisions relevant to the application – both Commonwealth and state.**



- 47 List the legal, policy, practical, commercial and other issues to be considered.**



48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s who enter into the scheme (with the applicant) relevant to the content of the ruling?

No Yes Provide details

49 Fully address the eight factors referred to in section 177D(b) of Part IVA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ITAA 1936), based on the information and/or understanding that exists at the time you submit the application.

The eight factors are as follows:

- The manner in which the scheme was entered into or carried out
- The form and substance of the scheme
- The time at which the scheme was entered into and the period of time during which the scheme was carried out
- The result that would be achieved by the scheme
- Any change in the financial position of the relevant taxpayer arising out of the scheme
- Any change in the financial position of any other person arising out of the scheme
- Any other consequences for the relevant taxpayer or any other person connected with her or him
- The nature of any connection between the relevant taxpayer and a person contemplated by factor 6

50 Provide a draft of the Scheme, Ruling and Explanations sections of a product ruling.

(Refer to paragraph 60 of [PR 2007/71](#))

 You must provide draft electronic copies on disk.

Section K: Documentation requirements**51 Before submitting this application, tick the boxes below confirming that you have:**

- | | |
|--|--------------------------|
| Read the important information about completing this checklist on page 1. | <input type="checkbox"/> |
| Provided full disclosure of all documents, agreements, and contracts relating to the scheme on which you seek a product ruling. | <input type="checkbox"/> |
| Provided three identical paper copies of the application and a disk containing a copy of your draft product ruling, plus copies of all electronic documents, agreements and spreadsheets | <input type="checkbox"/> |
| Noted in the 'Outstanding items' table on the next page, the reason any of the information has not been supplied and the date you expect to supply it | <input type="checkbox"/> |
| Provided a declaration signed by the applicant (or the applicant's agent) that the material in the application is true and correct. | <input type="checkbox"/> |
| Included with the application, consents from all parties to be named in the product ruling. | <input type="checkbox"/> |
| Provided the draft sections of the product ruling as required in Question 50. | <input type="checkbox"/> |

PART 3: Outstanding items

Missing item	Reason item not supplied (We will treat the application as invalid until you provide all outstanding items)	Date you expect to supply the missing item

Declaration

Before you sign this application, check you have completed it correctly. Penalties may be imposed for giving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I have provided in this application is true and correct.

Name

Position

Email address

Signature

Date

Day Month Year
□□ / □□ / □□□□

세법연구 12-05

금융상품 과세자료 사전확보제도에 대한 연구

2012년 8월 23일 인쇄

2012년 8월 31일 발행

저 자 안종석 · 구자은 · 정경화

발행인 조원동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2

ISBN 978-89-8191-594-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